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地域開發委員會會議錄

城北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都市整備局(建築科・都市整備課・公園綠地課)

日 時：1996年11月27日(水) 午前10時

場 所：區廳行政事務監査場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鍊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魯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鍊垈 네. 이승노 위원님!

○李承魯委員 이승노위원입니다. 정릉사회복지관 급년보수비로 5천만원 책정된 것 건축과에서 집행됐습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李承魯委員 그 사회복지관 5천만원 사용한 부분 그리고 현재상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委員長 李鍊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興先委員 네.

○委員長 李鍊垈 네. 유흥선위원님!

柳興先委員 주차장 관리카드 각 동네대장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도변경해서 지금 현재 원내 주차장을 가계로 변경시켰다는 이런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입니다. 거기 신축공사건축에 대해서 주차장을 동네 주차장을, 즉 말하자면 건평에 따라서 원내 주차장 2개랄지, 1개랄지 건축법에 따라서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동네에 보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임의적으로 하는지, 지금 방으로 만들었다든가, 가계로 만들었다든가, 하는것

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네별로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鍊垈 네. 나광수위원님!

○羅光洙委員 네. 나광수위원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84년에 동소문동과 정릉동에 한 건씩 있고, 그리고 96년에도 동소문동에 한 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넘는 건물들이 지금까지 미준공이라면 이것은 도대체 이 건물자체는 어떻게 됐으며, 철거는 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뿐만 아니라 94년까지 해서 133건이 미준공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어떠한 적법한 절차가 없다면 어떠한 처리방침을 세워줘야 이 사람들도 재산을 행사할 텐데, 84년부터 94년까지 비슷한 정권으로 지금까지 미준공이 됐다면 이것은 행정부가 잘못했든가 건축주가 잘못했든가 둘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하지 지금까지 시정못한 이유를 대주십시오. 그리고 미준공건축물 조치내용 여기에서는 우리가 건축심의할 때도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건축법에서 위반된 것도 주택과에서 하고 건축과, 주택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든요.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위반이 됐다면 이 시점에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가? 철거면 철거하고, 시정조치면 시정조치지 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시키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건축사, 감리자 행정처분이 92건 인데 이 분들의 명단이 있

습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네. 있습니다.

○羅光洙委員 이분들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委員長 李鍊炯 네. 답변준비됐습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조금만 정리해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정리하는 동안 한분만 질의해주세요. 김영기위원님!

○金鈴基委員 네. 건축허가시에 그 집을 지으려면 길로부터 몇미터 후퇴선이 있죠? 그 후퇴선으로 인해서 집을 질때는 자기가 건축법상 후퇴선을 내놔야 할 지역에 자기 사도라고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도로가 파손되더라도 다시 재포장하려면 보상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도로가 폐허된 이런 곳에도 실제 손이 갈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이 대략 우리 성북관내에 몇건이나 되고 있으며, 그러면 내가 지금 도로를 내놨으니가 구청에다가 이것은 보상해달라는 행정소송 이런 건도 현재 몇건이나 법정에 계류중에 있으며, 몇건이 우리가 폐소했고, 어떤 곳에서는 승소했고, 이런 것이 상세히 나온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우선 그 답변자료 준비된 내용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릉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2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아까 5천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2천만원중에서 1천7백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러가지고 설계당시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부담을 해서 그 미비점을 보완·보수하도록 하였고, 공사 당시에 시공자가 잘못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하고 드라이에리어거나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1천7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 하자보수공사를 완료를 해서 현상태로서는 지금 습기가 차거나 또 누수가 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100%는 되지는 않았습시다. 만은 거의 완공된 상태로서, 지금 일부 습기차는 부분이 강당부분만 조금 있습니다. 절로현상에 따른 강당부분에 습기차는 바닥에 조금 일부있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유홍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차장관리카드하고, 대장은 지금 준비돼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을 했거나 그 단속자료도 지금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84년도부터 미준공건물이 한건씩 발생을 해가지고 10년이 경과됐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현재 장기 미준공건물이 133건이 미준공되고 있는데 왜 이 후속조치가 안되고 시정이 되지 않느냐? 시정못한 이유를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행강제금을 왜 부과를 하느냐? 무허가건물도 아닌데 준공을 못받은 건물에 대해서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그 이유와 건축사, 감리자 조치명단을 제시 요구를 하셔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물이 84년도 이후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건축법이 62년도부터 생겼는데 장기미준공건물은 82년도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겨가지고 그때까지 위반건축물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 양성화조치를 해서 끝내고, 그 이후에 84년도부터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단속업무를 종전에는 철거까지 저희들이 예산·자재·인력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철거 조치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건축주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모든 감리·감독 권한은 건축사에게 일임을 해놓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이 발생을 하게되면 위반건축물의 건축주가 더 불이익을 당하게끔 그러니까 1년에 두번씩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지으면 이제

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끔 해서 조속히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제도라는 것이, 종전에는 과태료나 벌금형태로 되었습니다만은 이행강제금제도로서 지금 건축법상 이렇게 개정인데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사, 감리자 조치명단은 지금 바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준비된 자료에도 보면 127페이지에 그 명단이 감사초치에 대한 명단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3건 미준공에 대한 후속조치나 시정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해도 소규모건축물 저희 관내에서 6%에서 97%의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전부다 감리건축사들이 다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준공이거나 감독권한을 건축사들이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확인이거나 이런 것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하는 사항은 진정에 의거해서 현지확인을 하거나 이래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표본으로 그 준공이 되고난 이후에 상설점검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분기별로 위반사항이 적출되는 대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시정이 빨리 못되는 이유는 지금이 사실상 들어가서 입주해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퇴거를 해가지고 또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빨리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두번씩 지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위반사항이 빨리 조치되게끔 하고 형벌에 따른 것은 건축법 벌칙조항에 의해서 관계부서에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건축사들은 지금 건축사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타구에 있는 건축사더라도 위반건축물이 발생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羅光洙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鍊炯 네. 보충질의 입니까?

○羅光洙委員 네.

○委員長 李鍊炯 질의세요.

○羅光洙委員 지금 윤과장님 답변은 어정쩡한 그런 답변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133건이 지금 미준공이 됐는데 시정조치한다면 어차피 기건물을 지어지고 입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지어진 집을 시정조치한다면 그 집은 다시 헐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절반정도 헐어야 될 것입니다. 그부분만 시정하더라도 그러면 재산상의 그 사람은 얼마나 큰피해를 보겠습니까? 10년까지 걸려온 이 집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한다면 무슨세금 물려서 구정살림 하려는지 몰라도 이런 발상은 저는 온당치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84년도에 특별조치법 한번 내렸죠. 건축물특별조치법 내려가지고 그때 무허가 양성을 시켜주고, 아마 상당히 그 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줬어요. 정권자가 바뀌면 이런 무허가건물이라던가 모든 행위를 아마 특정건축물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6공이 바뀌고 지금 김영삼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10년이 되어도 이러한 건물들이 조치가 안돼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살수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근자에 이르면 90년도 이후에 발생했다면 근자에 발생했다면 단호히 조치하겠지만 10년씩, 5년씩 묵은 이러한 집들을 지금까지 시정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집 헐어야 됩니다. 윤과장님이 그 집에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러한 법에 있는데 법에 위반된 것은 그냥 넘어가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10년이상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서 시정조치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동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다 냈습니까? 아니면 의법조치했습니까? 어떠한 재산상에 위법조치를 했습니까? 의법조치안됐죠? 예를 들어서 재산 압류했습니까? 재산압류 안됐죠?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때는 90년이면 90년, 어느 한 선을 그어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돌아왔으니깐, 지방자치장의 어떠한 명분을 해서라

도 이러한 것들이 완화가 되어야겠다. 벌써 10년이 지났다면 이것은 완화가 되어야겠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魯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이승노위원님!

○李承魯委員 아까 정릉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鍊炯 아니 지금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들었거든요. 답변들으신 다음에 (……) 네. 유홍선위원님! 질의하세요.

柳興先委員 방금 존경하는 나광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10년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보안을 해준다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현재 감리건축 허가를 내면 감리자가 있는데 감리자한테 말하면 그 보수주는거죠? 집 지으면 평당 얼마해서 그 대가를 감리사한테 어느정도 수고비를 주는거죠? 그러나 이 공사를 다 끝내고 어떤 하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하자가 발생했는데 감리를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안되고, 그저 업자한테 이야기해도 시정조치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럴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는지 그 건축주만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지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또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건축주 어떤 재산적으로 피해 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결론에 와서 말하면 건축주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나면 앞으로는 어떠한 허다못해 단독면허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어야 어떠한 책임재가 분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감리자를 정부에서 인정한 감리사라고 한다면 어떤 용분의 대가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징계정도나 먹고 다음 소생의 길이 있다 이러면 결국에 가서 건축주만 피해를 보니까, 이 감리사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한건이나 두건 정도까지는 봐준다고

해도 세건부터는 고의니까 감리사의 면허가 취소된다던가 어떤 엄벌의 조치를 해야, 즉 말하면 서민들이 집하나씩 지으면서 피해를 덜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昌萬委員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정창만 위원.

○鄭昌萬委員 지금 유홍선 위원이나, 나광수 위원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지금 현재 건축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먼저는 감리사가 있고, 건축사가 있었고, 이번에는 건축사한테 전부 위임을 했다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요. 건축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집을 개인이 짓게 되면 미장하는 사람 보일러가게 하는 사람 야방하던 사람들이 집 막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도 없이 무슨 집을 지어주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에서 특별히 구청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무슨 허가로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느 허가제를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만 불법이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밤낮으로 생기게 됩니다. 지금 10년 안에 133건 이상이 나오면 이 사람들 건축주들은 벌금만 물면 뭐합니까? 집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행강제를 해봐야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되요. 집을 다 잘라내야 될 형편이에요. 집 문관계가 있어가지고 1m를 띄어야 할 데를 그냥 안 띄고 그냥 일자로 지었다든지 이랬을 때, 이것이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이것이 헐리겠습니까? 그럼 이행강제 하계금 부과를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벌과금을 1억을 매기든지 2억을 매기든지 해서 그 집을 양성화시키든지 그래야 이것이 살것이 살아 나오든지 그렇지 못하고 밤낮 강제이행금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뭐가 잘못되어 있고 첫째는 건축과에서 구청장 특권을 가지고 허가제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건축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정말 집을 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전부 부실공사

입니다. 지금 보일러가게 조금하던 놈이 그냥 또 하고 미장이 집 맡아서 짓고 돈이나 받아서 내뺄고 건축에 대한 것 건축에 대한 뒷마무리는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보십시오.

지금 건축사나 이분들이 '95년 '96년도에 57건 행정처분 했다고 났어요. 이 사람들 행정처분만 했었지 여기에 피해나는 것은 누가 갖는다는 것입니까? 건축주가 다 갖는 것입니다. 행정처분했다고 이 사람들이 속여서 안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손해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허가제를 한다든지, 그만큼 보장책을 세우든지 어떤 입금을 해서 1억이면 1억을 예치를 해서 보상대책을 해준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불법건물은 그냥 양성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에서 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깐 그걸 꼭 그대로해서 한번 꼭 시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는지 건축사들 이걸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건축행위를 볼 때는 개인이 물론 자기땅에 자기돈을 들여서 자기집을 짓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유재산권의 행사고 개인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집들이 서울과 같은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면 개인이 자기집을 짓더라도 고객과 서울시 전체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것도 전체 서울을 만들어가는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환경이라든

지 건축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고 제십니다마는 사실은 건축법이 그래서 법이 까다롭고 엄격하게 공공복리면에서도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미준공 건물이 쭉 나오고 있는 사유는 대개 보면 유흥선위원님, 정창만위원님, 나광수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생기는 행위자별로 관련자 유형을 보면요. 우선 저희 공무원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도 책임이 있고 감리자도 책임이 있고 시공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위법건축 행위를 실제로 장기 미준공 된 건물들이 왜 미준공되고 있느냐 하면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장시정을 시킬 것은 시키고 또 벌과금을 물리고 해서 구제를 다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93년 '94년도까지는 아직은 조금 구제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84년 '85년도도 벌써 이렇게 간 것들은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심한 건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타깝고 개인이 겪는 고통은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대지 100평을 가지고 있을 때 건축법상에 건물을 60평만 지어야 한다. 했을 때 대개의 시민들이 법을 지켜서 60평을 지어왔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70평을 지었다 하면, 이 사람을 만약에 구제해 주게되면 나머지 법을 지켜서 건축을 한 60평을 지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의식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 법지키는 놈만 손해 본다 이런 풍파가 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도 솔직히 안타까운 점도 많고 어느 정도 그만큼 자기가 위법행위를 한만큼에 대한 불이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고통도 그만큼 받아 왔지 않느냐 하는 구제해야 된다는 충분한 동정론도 가지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이런 풍조가 만연이

되면 지금 현재 건축법 지켜가지고 건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 하면요, 지난 82년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생겨가지고 규제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건축을 하면서 지금 다소 위반해 가지고 준공 안되더라도 언젠가 가면 이것이 양성화 될거 아니냐 해 가지고 한창 위법건축이 만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건축주나 공무원이나 감리자나 술한 징계를 받고 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왜 물리느냐 하면요 이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보면 당신이 60평을 지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70평을 지은 것은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당신이 그만큼 10평을 더 지어 가지고 돈을 번만큼 그 이상의 벌과금을 내줌으로써 당신이 절대로 법을 위반해 가지고 덕을 보지 못한다 도움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쳐줘야지만 이 법이 지켜지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행관계금이라는 성격이 그걸 당신이 치유를 안하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이행관계금... 옛날에 '92년도 이전에는 과태료만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이 바뀔으로써 형벌이나 예를 들어서 벌과금만 가지고 내 벌금 예를 들어서 10만원만 내고 나서 한 달에 20만원 수익이 들어온다면 전부 다 벌금 10만원을 내고 20만원 이익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치유가 안됩니다. 20만원 벌면 20만원이상의 이행강제금으로 댈으로써 당신이 스스로가 치유하게 만드는 것이 이행관계금의 취지입니다. 또 아까 정창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또 유홍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러한 행위가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건축주는 속된 말로 잘 모르고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시공업자나 건축사한테 전부 다 위임을 하고 도급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 법을 잘 알고 적어도 여기에 전문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하면 부실공사도 없어질 것이고 위법공사도 없어질 것이 아니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2년도에 건축법 개정할 때 실제로 소규모 건축공 현행 건설업법에 보면요 주거용 건물은 200평미만으로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비주거용 건물은 예를 들어서 점포주택이라든지 150평미만은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 하나도 하수도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전기공사 하나도 전기공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수도공사도 수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정화조 하나도 규격품을 쓰든지 정화조 업자가 시공해야 되는데 이 전체 집을 짓는데 총괄을 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여러 부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집 하나 짓는데 수도면허 하수도면허 상수도면허 통신면허 이런거 전부 다 요구할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 집을 짓는데 어떤 자격제한을 하자. 예를 들어 건설업법에 보면 전문 면허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규모 건축전문 면허제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하다못해 면허가 없더라도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주면 적어도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무책임한 건축은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면허는 자격제한을 없애줌으로써 건축주도 도와주고 건축공사의 법질서도 확립하고 부실공사도 방지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제가 서울시에서 건축법령담당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부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회에도 건의했었고 건교부도 건의했었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입법예고까지 되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경제활동을 지금도 정부가 공무원들이 너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규제를 한다면 집짓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고 수많은 현재 건축에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수단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것이 최종 국회 검토과정에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부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상태로는 건축행정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다, 해서 다시 건의한 것이 작년도에 건축법 개정할 때 최소한 시공업자가 건축착공 신고때에 자기 주소증명이라도 분명하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지 이 건축이 잘못 되었을때 실제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법개정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착공신고시에 시공자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장이 하든 목수가 하든 철공이 하든 누가 하든지 책임추궁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상으로 잘 되지않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까만은 예를 들면 제가 공사를 수주했다고 치고요, 우리나라위원이 집을 짓는 다고 치면 내가 여기다가 내 이름을 기재해 주면 평당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기재 안 해주고 건축주 당신이 짓는다고 하시오 하면 건물주한테 평당단가 150받는데 내 이름을 거기에 기재하면 내가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처벌까지 받아야 하니까 속된 말로 내 나중에 물을 벌금까지도 당신이 무시요. 해가지고 공사계약 금액이 평당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착공신고 때 시공자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지만 실제로 건축주가 생각해보니까 평당단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차이가 난다하면 까지겠 내가 법지키고 내가 제대로 지면 되지 하고 그대로 자기가 짓는 걸로 동재해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관계로 건축물들이 지금 여러가지 건축사나 시공사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할 부분도 많고 정리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여러가지로 노력했었는데요. 이 법이라는 것은 건축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이 하나 재정될려면 중앙부처에서도 경제관련부서 또 입법관련부서 여러부서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금 전혀 법적으로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

다. 다만 금년부터라도 지금 저희들이 착공신고때 분명히 시공자를 규제해 주면 실제로 건축주는 나중에 책임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단돈 얼마 덜 주고 덜 받고 이걸 떠나서 법을 제대로 지키고 당신이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하고, 예를 들면 시공사한테 재산권이라도 행사하고 막말로 민사재판이라도 갈 수 있을려면 거기에 신고할 때 분명히 시공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기재해 주게 된다면 건축주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은 훨씬 더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서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알선을 해 주시면 우리 행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羅光洙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나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羅光洙委員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법의 논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 전체가 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다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텐데 그 장치에 앞서서 이미 발생한 건수들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의했고 따라서 건축들이 아까 유홍선위원님이 잠깐 자격문제 처벌에 대한 문제를 했었는데 지금 윤연홍 건축사무소입니다. 보문1가 45번지에 있는 이 건축사는 6번을 위반했습니다. 행정처벌을 6번 받았습니다. 이러한 건축사들이 6번씩 행정처분을 받아가면서 불법건물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격없는 사람을 탈탈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또 대주사무소 송호 삼선5가 257번지에 이런 사람도 4번씩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충분히 갖추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아가면서까지 불법건물을 자행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건축주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격증을 갖춘 건축사가 이렇게 해 주어도 면허취소는 커녕 행정처분 불과 제가 알기로는 1,2개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벌을 한번 받아봐야 별거

아니다는 말입니다. 또 다음에 처벌받아도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얘기입니다. 4번 6번씩 위반해도 그냥 무유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건축위반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격증을 갖춘 사람부터 엄격하게 제제를 하고 또 그리고 선량한 주민들은 이 사람만 믿고 지은 이 건축주는 이런 상태까지 발생하기 이전에 충분한 행정감독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감독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나가면 어차피 비리가 있을까 봐서 현장 나가지 않는다 그 명분 좋지요. 그 명분 참 좋지요.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건물짓는데 왔다 갔다하면 무슨 비리가 있지 않는가 옆에 사람들 볼 때 그런 의심도 있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철저한 자기양심껏 그런 비리에 통하지 않고 철저한 감독을 해 주었더라면 이러한 발생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즉 말하자면 10년까지 된 이 건물들은 법도 좋지만 법을 이미 위반한 사항을 집을 찌른다면가 아니면 과태료 한번에서 끝내고 이 선에서 끝내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풀어 준다든지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이 사람들 나중에 가서 집 팔아야 돼요. 집 팔아야죠. 본인도 참 답답합니다.

○柳興先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유흥선 위원님

○柳興先委員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나 광수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음식업체가 정지를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세번 먹으면 그 허가가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장소에 3년인가 몇 년인가 다시 재허가가 안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축사도 즉 말하면 감리자도 이러한 어떠한 엄격한 조치를 한다고 하면 벌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찌고 다니면서 감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6번을 당했어도 구청에서 제제를 받았

어도 계속적으로 즉 말하면 건축사 노릇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면 되지, 걸리면 넘어가면 되지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즉 말하면 생각하기를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구청 행정을 생각하기에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피해보는 것은 건축주만 피해본다는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매제를 거치면 안전하게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이 건축사는 그 해가 어떠한 그 기존된 해를 넘겨야 건축 허가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어떠한 제제를 해야 건축사들이 신경을 쓰고 반성을 하지 걸려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한없이 피해자는 건축주만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鈴基委員 이연경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김영기 위원님.

○金鈴基委員 과거에 잘못된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건축사 한번 잘못을 원인으로 인해서 그 10여년간을 오랜 세월의 자기 집을 지어놓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건축주에게 너무나 과중한 피해를 주는 거라고 볼 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그 잘못된 부분은 건물이라든가 이것을 명시하고 준공을 준공대로 내주어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그런 규제방안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것만 가지고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무한정으로 이렇게 나가야할 것인가, 그분들은 과연 지금 방금도 나위원이 집 팔아먹고 나가야 할 형편이지만 집이 팔렸다고 해서 그 집이 팔립니까?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어디부터서 어디까지 잘못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昌萬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鍊炯 네. 보충 질의 하시는 거죠.

○鄭昌萬委員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시는것 좋은 얘기고 조치도 좋지만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즉 뭐냐면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북구청장이 강한 지침을 해서라도 아까같은 허가제를 해야지 하지, 아니면 불법공사 위법 건물은 앞으로 매년 증가한다고 봅니다. 왜 지금보면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매년 증가율이 축소되는게 없습니다. '94년에 30건 '93년에 20건 '92년에 21건 '91년에 28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증가되지 감소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북구청장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허가제를 실시하든지, 어떤 보장책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지어주는 사람이 책임을 지어 줄 수 있겠음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왜 그렇게 되느냐 현재 건축주가 어느 집짓는 사람 미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지어달라고 의뢰했을때 그 사람만 믿고 합니다. 현재 여기에 건축사는 건축사의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 사무실에 2,3명입니다. 그러면 5,6군데 7,8군데가서 현장에 건축사의 감리자가 따랐지만 건축사가 다 다니면서 힘듭니다. 그 지어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으면 준공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돈 몇푼 더달라. 짓는데 돈을 더 흡수를 합니다. 집을 질 때 그리고 옥탑에 물통이 들어가는데 한평인데 이것을 한평 두평 더 늘려서 방 하나 합시다. 이것은 내가 준공을 책임지겠습니다. 건축사가 지어준다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건축물은 앞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래도 집을 지었던 사람이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건축자는 얘기들었으면 하다 못해 기구파는 사람들도 파는 철물점에 있는 사람도 다주게 되어 있어요. 보일러가 하는 사람이 전부 짓집는게 보일러입니까? 미장이 벽마르는 것이 미장입니다. 목수는 집을 짓는데 틀을 만드는게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집 주인에게 어떤 형평으로 해줄테니까 돈을 얼마 더 달라. 아 괜찮다.내가 막말로 해서 돈 몇푼주면 다된다.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자꾸 나왔기 때문에

자꾸 증가율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북구청의 구청장이 지침에 의한 어떤 허가제를 해서 아주 그 자체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지어주는 사람이 제대로 지어 짓겠음 함으로써 앞으로 건축사가 시정이 되고 몇번 된다면 아주 엄하게 다스려가지고 허가를 취소시켜준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알겠습니다. 중복된 발언이 많은 것 같은데 중복된 발언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魯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鍊炯 네. 말씀하세요.

○李承魯委員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하나 물었습니다. 이연경 위원장 임의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증 제도나 아니면 어떤 면허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것은 안됩니다.

○李承魯委員 안됩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李鍊炯 나광수위원님 의사 질의...

○羅光洙委員 조금 전에 이연경 위원장님께서 중복된 발언 말씀하셨길래 넘어갈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여 놓은 것은 보충 질문이 너무 길다 보니 본말은 없어지고 엉뚱한 답이 나오고 그러합니다. 이런 정도는 이연경 위원장님이 다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金甲濟委員 나는 다른 각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답변들은 다음에 질문하시도록 하세요.

○金甲濟委員 이 문제 준공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鍊炯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甲濟委員 비교적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먼저 사실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을적에 동별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동별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북동 1,2동이 있는데 성북동 해버리고 길음동에 3동이 있는데 길음동이라고 해버리고 그것을 왜

파질지 모르나 내가 요구한 자료는 그런 동별이 아니라 30개 동별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다음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위반 건물은 99개인데 부과 건수는 105건입니다.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건수는 기탁건수중 사전 입주자로 조치된 건수가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입주라는 얘기는 사실 이미 통상화된 사실인데 이것이 흔히 민원에 의해서 사전 입주가 고발되는 걸로 압니다. 구청 차원에서 달리 조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솔직히 사전 입주가 99%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고발을 하고 어느 사람은 그대로 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단지 민원에 의해서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강제 이행금 관계에 대해서는 뭔가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행금을 지금 2차 3차 4차 내가 알기로는 원법대로 하면 6차 이상이 지금부과됐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1년에 두번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2차 3차 4차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은 지금 부과가 얼마 입니까? 1억5,782만 얼마인데 채납액 또 1억1,300 내가 알기로는 78%가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된다면 부과해 놓고 징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부과액에 대해서 채납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징수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6건이 지금 법원이 이송됐다는, 소송중인가본데 소송에서 판결까지 있는 것이 있는지 그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중복된 발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尹炳圭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게 저희들이나 누구라도 똑같이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선 준공이 발생된 피해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또 앞으로 지을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겠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 내용으로 요약이 되고, 다음에 위반 건축물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치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반 건축물을 조치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장조사를 조사 내용의 모든 현안을 건축사에게 보내고 특히 필요하다고 했을때만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진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분이 저희들이 진정이 약 1년에 500건입니다. 500건이고 방문 및 이런 방문 인원을 따지며 허가 건수보다 진정건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 봐보면 행정조사는 건축물이라는 것이어서가 아니고 이런 정도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사전 입주에 절차만 그냥 준공을 해도 될 것인가 과하지 않느냐, 또는 한 두명 3,4명 늘어났는데 소정거리가 몇 cm모자라는데 위반건축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정이 안되는데 그것을 조치를 하느냐 관계 공무원들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이런 입장에도 해 봐야 되고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상대방 민원이 그 위반된 부분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위반사업도 아니며 시공자와 건축주가 감리자가 서로 싸워가지고 준공 신고서나 이런 서류가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준공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건물은 제대로 지어 났는데 애매한 피해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건축주가 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없어야 되겠는데요. 이행강제금 제도라는게 그렇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발생이 되고 나면 이행 강제금 제도라는게 '92년 7월달에 생겼습니다. 준전의 위반 건축물은 '84년도부터 '92년도 6월말까지 생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처

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그러니까 '92년 7월 이후에 발생한 건축물은 이행관계로 1년에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위반 건축물을 없앤다는 빨리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두 번씩 부과하겠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를 하반기 상반기때는 부과로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대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집을 세밀하게 조사를 현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이행 강제를 할것인데요. 첫째가 위반 건축물 발생이 안됐어야 하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위반 시공을 하는 것이 문제고 감리가 단속을 못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96년 1월 1일부터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현장 관리 소규모 건축물도 건설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시공을 하는데에는 일정한 자격을 조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격 기술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나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2년이상 이수한 자 이것까지 아주 직영을 하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잘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건축주가 자기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일반 부여하는 일반 소규모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되었는데 건축주되시는 분들이 아직 법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이래서 시공자와 공사비 관계 때문에 허가 신청을 할 때 그 시공자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영을 하는 이리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발생이 되면 일단 시공자까지 같이 고발을 해났기 때문에 일단은 소규모 건축공사도 앞으로는 시공을 해가지고 위반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자기도 고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물이 많이 준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위반사항이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건축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냥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절차가

미비된 이런 준공이 가능한 건축물은 그냥 해드렸으면 좋죠. 저희들은 사전입주만 현재 가능하면 그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까.

○羅光洙委員 지금 답변도중에 이행강제금 실시가 '92년 7월이후 법이 개선됐다고 했죠. 그 이전에 '84년부터 '91년까지가 62건, '92년부터 '94년까지가 71건이면 '84년부터 '91년 이전에 62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로 끝났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면 행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건축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건수가 차액이 많이 납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는 105건 들어 왔어요. 이 자료에는 그렇다면 총 미준공건이 62건이 '84년부터 '91년까지도 '92년부터 '94년까지 71건이 이에요. 위반건축물은 99건 미준공은 사유에는 이 자체도 전부가 다 틀려요. 그러면 '91년까지 '84년부터 이때까지 과태료로 끝난다고 하면 조치를 이것은 건축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간단 짚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建築課長 尹炳圭 장기 미준공 건물이 '84년도부터 쪽 133건이 나왔습니다.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이 99건입니다. 이 중에서 99건에 대해서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92년, 이전에는 6월 이전에는 과태료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 되고 '92년 7월 1일부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羅光洙委員 그러니까 '84년부터 '91년까지 62건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1회로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태료 1회로 끝나는 것까지도 지금까지 해결 못했다는 것은 건축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과태료 내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들은 세금을 내죠.세금도

안 됩니까? 재산세들을 냅니까? 안 냅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냅니다. 내고 있습니다.

○羅光洙委員 내쥬.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은...

○建築課長 尹炳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위반을 해가지고 위반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92년 6월 6일 이전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되면 재판 사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벌칙금이 나가고,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나면 과태료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조치가 들어 갑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고 위반사항은 시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반사항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鈴基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鍊炯 잠깐만요.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합시다. 답변을 정확하게 잘라서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建築課長 尹炳圭 네. 지금 강제집행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구요. 나머지 검사처분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金鈴基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말씀하세요. 김영기 위원님.

○金鈴基委員 지금 시작한지도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할 수 있는 정리차원에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委員長 李鍊炯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建築課長 尹炳圭 건축사 조치관계에는 저희들이 '95년 10월 17일부로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축사처분을 얼마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되었다 했을 때 감리건축사인데 얼마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처

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의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이 된다 했을 때 그 미만까지 1개월도 되고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하선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위반사항이 적출이 되면 최하 얼마이상은 강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95년 10월부터 개정이 됐구요.

다음에 1년이내에 영업도중에도 위반사항이 다시 재차 적출이 됐을 때는 50%까지 가중처벌을 하게끔 해서 건축사에 대한 가중처벌은 제도가 많이 강화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가 되면 2년내에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처분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위반건축물이 근본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허가 준공건수의 약 3분의 1씩 점검을 해가지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가됐을 때,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신청이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가감이 되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이 금액을 조정할 성질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되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결정해서 부가를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때에도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구가 자체적으로는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는 가능하겠습니다. 구 자체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구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점검계획이나 건축사교육 시공자교육 이것을 더 강화를 해서 사전에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는게 최고로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실무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대중 질문요지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근본원인 불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전부 이

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시 건축후퇴선이 도로화 된 상황에 대한 답변은 다 들으셨습니까?

○金鈴基委員 그거 아직 안나왔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그거 마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유홍선위원님이 옥내 주차창시설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柳興先委員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그럼 답변 마저 해주세요.

○建築課長 尹炳圭 네. 건축선 후퇴부분이라 그래서 도로폭에 4m 미만되는데는 원래 건축을 못합니다만은 지금 4m 미만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 건축선 후퇴부분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집을 짓게는 해주는데 그만큼 집을 지을 때는 4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땅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76년부터 '80년도까지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준공이전에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기부채납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 내려오다가 이 제도가 너무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이전에 꼭 담장을 칠 필요는 없고 건축물이 침범이 되지 않으면 건축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상설점검위시 이런데서 적출되는대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자기 대지내에 짓는 건물이 아니고 공공용 여러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로 확보해야 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 대지내에 짓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문제의 주안점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보충질의 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金鈴基委員 요즘 종종 주택가에서 이웃간에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후퇴선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는 내 사도다. 왜 내집앞에 주차를 하느냐 해가지고 이미 도로로 나와 있으면 엄연히

우리는 지금 교통세를 내고 있다. 도로세를 내고 있다. 하니까 왜 꼭 너만 주차를 해야 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것 등이 종종 시비가 있어서 이웃간에 서로 화목이 불목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안된 일이나 이미 건축을 할 때 한번 도로로 내놓고 후퇴선을 내렸으면 그 부분은 말이지요.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도로화 해서 보상을 해주어서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든지 지금 그 부분이 깊이 파손되어도 포장을 못해줍니다. 포장을 해주면 말이지 이건 남의 사도에다가 왜 도로포장을 하느냐 보상해라 하고 보상청구소송이 들어올까봐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차원에서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꼭 우리구에서 필요한 부분같으면 보상을 해주어서 이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建築課長 尹炳圭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을 위해서 도로로지목변경을 하고 분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해가지고 운영해 나오다가 그 제도가 헌법의 기본명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법령이 다시 현행 제도개선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내땅을 도로로서 내가 집짓는다는 적 때문에 내땅을 도로로써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건축법이 '62년에 생겨서 저희들이 '96년도까지 오면서 약 24.5년 동안에 변경된 사유가 90건을 넘도록 변경이 됐는데 완전히 10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보다 보면 다시 또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개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다 같이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다시 법령제도가 이런데서 보안되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

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이해 되십니까? 핵심부분만 짚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장 질의입니까?

○金甲濟委員 보충질의예요. 제가 질의했던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얘기가 안 나왔고 '92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가했는데 과연 '92년에 한번 부가하고 금년에 부가하게 되는 것인지, 그 동안 2차 3차 4차도 부가한 건수가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金甲濟委員 그럼 건수보다도 2차, 3차, 부가한 사람도 있느냐?

○建築課長 尹炳圭 네. 있습니다.

○金甲濟委員 실제로 얘기하자면 '92년도에서부터 이행이 안됐다면 지금 법대로 하자면 6번정도가 부가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그렇게 6번까지 부가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두번씩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이 아니고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번씩 다 부가된 것은 아니고, 자꾸 그렇게 이제 1년에 두번씩 부가할 수 있게끔 변천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金甲濟委員 그럼 이 6건이라는 소송이 '92년도 이후에 몽땅 발생한 6건입니까? 지금 재판계류중인 것이 6건입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재판계류중인 것이 6건입니다.

○金甲濟委員 그럼 그동안의 결과는 어땠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建築課長 尹炳圭 법원에서 통보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甲濟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네. 자료를 뽑아가시고 좀 있다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제십니까?

○李承魯委員 네. 질의있습니다. 아까 정통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전에 타 위원님들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골목길에 소규모 주택 신축과정에 있어서 지금 도로포장한 부분에 상당히 지금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으로 인한 원인행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보도블럭 7건 하수관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손 행위 보상조치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鍊垈 네. 다음 문경주위원장 질의하세요.

○文京周委員 먼저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업무추진 현황에 있어서 국과 국간의 협력, 과와 과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묻고 싶어요. 현재 그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각 출입구마다 통제막을 설치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은 차가 통행을 못하게 되는데 그 지역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그 협조 요청이 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용도변경문제 말씀 좀 해 주시구요. 현재 도시설계 용역 지구지정이 7월18일날 돼 가지고 9월18일날 시행공고를 했는데 현재 도시설계에 대한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垈 네. 구재영위원장님.

○丘在永委員 네. 구재영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139 자료요청 하는 것인데 다중 이용시설물로써 구청장이 지적한 건물11건이 있는데, 이 11건에 대한 것은 어느 곳인지 설명좀 해주시구요. 그 구청 및 5개동 청사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결과가 성북구청하고 동선1동 외에 돈암1동 5군데인 것 같은데, 거기에 결합된 안전진단검사의 미비점이 무엇, 무엇인지 확실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垈 네. 유홍선위원장님.

○柳興先委員 네. 유홍선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6개월마다 2번씩 물리게 돼 있

다고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이행강제금만 물려서 능사는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지도로 해서 풀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주민의 대표로서 꼭 벌가금만 물려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1년에 2번씩 물리는 것을 1번정도 물리면서 마치 우리 구민들한테 세금만 부가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며 6개월마다 물려야 할 강제이행금도 1년에 1번정도로 물리고 당초에 이러한 불법건물이 생기기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제이행금은 1년에 1번정도 물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承魯委員 위원장. 아까 정릉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 그랬는데...

○委員長 李鍊炯 네. 그것은 명확한 답변을 아직 못들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23分 監査中止)

(11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鍊炯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됐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준비되셨습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정회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장기 미준공건축물하고 관련해가지고 정창만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면서 사실은 위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기본적인 사유가 시공자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시공자 자격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규제해가지고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을 근절시키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

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그 부분에 시공자를 어떤 형태든지 건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금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시공자를 책임시공자를 착공식할 때에 분명히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가지고도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법률이나 제도개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기위원님께서 건축선 후퇴부분이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가지고 지역주민들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국가나 시에서 공공도로같은 것은 전부 국가나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위원들께서도 구정을 운영하시고 하면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현재 국가재정형편이나 또 구재정형편상 도시계획선이 필요하다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해결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소규모 도로 즉 작은 도로에 접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나면 건축에 따른 주차수요나 통행인의 교통수요는 필요한데 이것도 대책없이 그냥 건축허가해 주면 또 민원이 되고 그런다고 도로가 확보될 때까지 건축을 안해준다 하면 작은 땅에 접한 사람들도 작은 도로에 접한 사람들은 자기 땅가지고 집도 못짓는 이런 또 불평등이 되지 않나 하는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길게 보면 어차피 공공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당선이 업무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도로를 후퇴해 놓고 집을 지으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정형편상 지금 그것을 빨리 빨리 보상을 못해주고 하다보니까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또 구제정형편이 퍼지는 대로 우선 민원이 되는 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그 일반 이행강제금을 부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가했는데 법원에 비송한 것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습니다. 그 법원에 비송을 하면 이것은 행정소송건이 아니고 약식재판입니다. 간단한 얘기로 법원에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가하는데 부과를 받은 주민입장에서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부당하다. 아니면 돈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부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그 이의신청한 부분을 법원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한 내용하고 민원인이 제기한 이의대비서를 동시에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약식처분이 되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약식재판으로 이것은 얼마하고 끝내 버립니다.

끝내 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얼마나 조정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甲濟委員 그 통보요구는 못합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실제로 그 법원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가 자료요구를 해도 자기들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면 부가 차수별로 1회나간게 몇 건, 2회나간게 몇 건, 3회나간게 몇 건 그것을 요구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뽑아가지고 오후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경주위원님께서 현재 국간, 과간의 공조체제가 원활한지 여부와 차없는 거리에 접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도시설계 추진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런 말씀드리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공감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자치제시행이후에 저희 성북구 건축행정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행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라는게 일시에 혁명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는 과감해도 대개의 경우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국장주제하에 과 간에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국간에 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 구청장이하 또 국장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협의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아직 과별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것이 일반 민원인들한테 가끔씩은 형포식으로 또 무책임한 책임전가식으로 미루다보니까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 많다하는 얘기는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 의식도 개혁하고 또 이제 저희들 스스로도 옛날에는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구청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츰 개선해서 더 원만한 협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 경우에 거기에 접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그 도시교통 촉진법에서는 차도도가 없는 경우나 또 차가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를 변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만 차없는 거리의 조성에 필요성 여부와 또 그것을 없었을 때 실제로 거기를 찾아오는 일반시민들이나 또 주

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없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주차장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정비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7월까지 확정돼 가지고 9월달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입찰로만 해 가지고 최저가를 응찰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 되도록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썩게 비지떡이라고 용역성고가 너무 부실해지고 또 설계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공사나 실제로 사업시행과정에서도 부실하게 된다. 하는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금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실제로 먼저 각 기술평가를 먼저 했습니다. 기술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각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한 실적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선행한 기술적인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계용역을 수행할 것인지? 사업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전체 응찰한 업체 6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상위 3개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기술평가를 해 가지고 3개 업체로 하여금 지금 재무과에서 가격입찰을 하도록 홍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가격입찰이 되면 바로 그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자가 선정되고 내년 7월까지 그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재영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지정한 안전진단 대상건축물 11건 하고 공공건축물 안전진단의 미비점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결의한 1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중·대형 가정용시설물 11건은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공동건물은 현재 그 관리주차장 관리하는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성북구청이 당초에 5층으로 했습니다. 만은 지금 6층으

로 올라가 있고 그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근무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지은지 오래된 건물들의 동장들이 이 건물의 안전진단을 해달라해서 요청이 온 부분에 대해서 5개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단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丘在永委員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월곡동 동사무소 2층이 1백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줄로 아는 데 그 건물 전지가 아직 10년이 못됐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저희가 그것은 진단을 해놓는 전문업체에서 안전전문기관이 진단을 하면 하자의 상태는 어떻게 돼있고 이 하자가 건물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어디인데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 대책보수나 보강을 해가는데 소유공사비는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이 돼가지고 그 원인이 밝혀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단이 나오면은 저희가 진단보고서하고 아울러서 구재영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丘在永委員 그러면 공공건물 지은 년도수 하고 준공년도수 하고 거기의 하자에 대한 원인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원인은 정확한 진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가 부실했는지 그 기초가 부실했는지 예를 들어 공사가 부실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철근이 잘못됐는지 콘크리트가 잘못됐는지 그 원인은 진단종합결과가 나와야 알거든요. 저희들이 미루어 추측은 몇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기계측정이라든지 기술측정을 해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건립년도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뵈으면 바로 곧 제출할 수 있습니다.

○丘在永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상월곡동 동사무소는 어느 안전진단업소에서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전번에 제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한 1백5십명쯤 수용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한 얘기를 하겠죠.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아닙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구분해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동사무소면 동장이 왔을 때 어디 건물이 균열이 갔다. 금이 갔다. 이러면 아니 이거 집이 위험하지 않느냐 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이나 여기에 이것이 괜찮은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구청에 가면 건축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감별건축사들을 해가지고 일단 육안진단을 나갑니다. 전문가들이 나가서 보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육안 점검으로 끝나고요. 점검을 했을 때 이것은 정밀측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금더 세밀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할 때 정밀진단에 들어갑니다. 점검이 끝나고 그 다음 정밀진단에 들어가는데 현재 진단들어 간 것은 점검이 된 상태에서 진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정밀진단에 들어갔고 현재 이 건물은 균열상태가 파손상태가 어디까지이고 여기에 위험요소가 어느 정도인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원인은 무엇이고 일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진단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丘在永委員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선정이 돼있습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

○丘在永委員 용역업체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다음에 유홍선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이 년2회 부담·부가되고 장기간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가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너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주는데 이것을 부담을 줄

여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서두에 장기준공 건축물건을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실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질서 확립측면에서 보면 아까 나광수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정창만위원님 이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망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충분히 공감도 가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년간에 건축허가건수가 보통 년도별로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약 1천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법건축물이 약 30건이 발생된다고 보면 970명은 법을 지켜서 짓는데 그러나 30명이 법을 파악으로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약화해 주다보면 법을 지켜서 짓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까지겠 그 정도면 나도 법을 위반해서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심리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위반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너무 가혹한 처분은 우리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도 갑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래서 금년까지는 거의 1회에 한번 정도만 법으로 보면 1년에 2번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사실 한번만 부과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까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가 이렇게 지나면서 자꾸 위법건물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완화해 줌으로써 이런 위법건물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법대로 최대한 강하게 두면 다 할까하는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에 일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

숨이 계셨으니까 저희도 개인적인 사정과 전체적인 공공복리 측면과 비교역량을 해가지고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柳興先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질의하세요.

○柳興先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봐주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엄격한 지시를 해서 처음부터 위법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위법을 하고 있으면 대개 보면 제가 보기에 하지말라 빠져나가는 방법이 참 많아요. 강력하게 못하게 제재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요.

이러면 벌금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미 공사는 다 진행되어 버렸다 이말입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자재를 압수해 버린다던가 어떤 사람 시켜가지고 못하게 만들어 버리던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정정하게 해놓고 즉 말하면 완공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물다보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결국에 가서 이 집 팔아먹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런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손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봐주지 말고 강력하게 하되 그것을 어느 시점까지는 강력하게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부활해줘야 된다는 규정을 가져야지 계속적으로 그 사람 영구적으로 손들고 나갈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낙오자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건축허가시에 골목길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이나 보도블럭이나 상수관 하수관등을 파손할 때는 원칙적으로 100%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할 때 그래서 수도는 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관을 키워라, 도로를 굴착할 때는 굴착부분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공사가 끝나면 전부 다 건축주 책임하에 100% 원인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鍊炯 네. 보충질의 하세요.

○李承魯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몇군데 사진을 찍어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원인행위로 보상조치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독을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95년도 '96년도에서 자료 1-129페이지 보면 건수가 7건 하수관이 1건 이렇다보면 여기에 보상조치 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진정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인지 그 보상조치를 아까 그 기준으로 물어봤던 것입니다. 물고였던 부분이 가라앉아 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렇게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여러번에 걸쳐서 주민들이 아마 민원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어떤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建築課長 尹炳圭 건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아마 파손이 되거나 또는 물이 고여가지고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물이 고인 상황인데 이것은 현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 조치방안을 건축주가 공사로 인한 파손인 것 같으면 건축주가 원인자부담을 해서 완전히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承魯委員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동의 골목길을 보면 골목에 주택을 한두채만 짓게 되면 바로 소규모 포장공사를 다시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안에 레미콘차하며 덤프차 이런 차들이 계속 통행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다시 공사하는 것은 고압블럭 이것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도감독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각동에 현재 내려간 소규모 행사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골목길 이런 신축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아까 정릉사회복지관에 대

해서 보충질의 하실것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李承魯委員 정릉사회복지관을 작년에 행정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14군데가 하자되었던 부분을 지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그걸 얼마전에 본 위원이 현지를 방문해본 결과 지금 1,700만 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했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도시정비국 성북구 건축과의 행정이 거기까지 밖에 미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전에 한미토공 시공회사 한미토공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것부터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럼 하자보수 기간은 몇년입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3년입니다.

○李承魯委員 3년입니까? 3년이면 내후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5월달이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자보수 기간내에 지금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하자보수 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에서는 전혀 자기네들은 우리 시공회사의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建築課長 尹炳圭 그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올 '96년 4월달에 저희구 위원님들하고 관계 기술자, 시공사 또 구조 개설사들 해서 같이 합동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보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설계도 잘못된 게 있고 시공자가...

○李承魯委員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성해가지고 간것을 본인도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1,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고 한미측에서 그러면 이번에 책임지고 다시 보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네.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그 옆에 빈틈을 파가지고 돌

맹이 자갈 넣은것 그 부분 말입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네. 문설주 밑에 일단, 물이 현관 부분에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문턱대를 설치했고, 백화현상을 제거했습니다. 외부유입수가 차단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시공사 측에서 했습니다.

○李承魯委員 됐습니다. 그 위에 강당 뒷부분에 벽면만 말이에요. 지난번에 물이 계속 흘러내리던데 그 뒤에 옹벽 전부 됐어요?

○建築課長 尹炳圭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기계보수 공사가 완료됐던 부분이죠. 강당 뒷쪽에는

○李承魯委員 뒤에 옹벽을 다시 재굴착 해왔느냐고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강당 뒷부분에 산쪽 있지 않습니까?

○李承魯委員 학교 도로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학교 도로쪽은 작년에 파가지고 보수를 했고 금년에 할 때 도로쪽 말고 그쪽 뒤에 산쪽 있지 않습니까?

○李承魯委員 학교 도로쪽을 어디 파요? 지금 며칠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옆에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학교쪽으로 보면 지금 학교에서 들어가는 도로에서 진입로에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하면 바로 복지관지역에 갑니다. 학교 위쪽에 학교 쪽으로 그쪽 부분을 전부 파가지고 방수공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외부유입수 차단을 위해서 거기 전부 배수트레인 다시 다 묻고 했습니다.

○李承魯委員 그쪽 부분이 강당의 정면 벽면쪽이 아니고 옆에 부분 아닙니까? 파본데가 지금.

○建築課長 尹炳圭 지금 강당에 들어가다 보면 학교쪽으로 맞은편 출입구에서 바로 맞은편 쪽은 작년에 그 부분 뒤에 벽체를 다 파가지고 공사를 했고, 이번에 보강공사 한 부분은 오른쪽편 절개지에 있는데 트라이에를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파가지고 공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맞은 편쪽은 작년에 했던 상황입니다.

○李承魯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말하기를 계단부분 우수받

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지하 1층에 화장실 정화조 문제 이런 부분이 증점적으로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환기통은 몇 개 설치한 걸로 봤습니다. 그 우리구에서 1,700만원 가지고 한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建築課長 尹炳圭 네. 구에서 한것이 환기구도 수를 설치하고 트라이에도 옆에 설치해서 빗물하고 바로 접하지 않게끔 그런 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설계자가 한 것은 각 창문마다 팬, 배기구 이런 것은 별도로 설치했죠.

○李承魯委員 그러면 정화조 문제는 거기 안에다 창문 열어가지고 보면 밑에 정화조 있죠? 화장실에 거기보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완전히 다 메꾸어 버렸던데. 시멘트로 지금 눌러졌죠? 포장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하죠?

○建築課長 尹炳圭 정화조 청소구 말씀하십니까?

○李承魯委員 네.

○建築課長 尹炳圭 청소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李承魯委員 청소구 있어요? 어느 쪽으로 뚫어 났어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것을 작년에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쪽에 냄새가 강당쪽하고 유아실쪽으로 들어 온다고 해가지고 냄새를 때면서 어차피 청소구가 되어야 되니까 저쪽에 진입도로 하고 반대편쪽에 얹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벽을 일부 뚫어가지고 환기구점 청소구를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정화조 냄새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지금은 위원님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현재 우리 건축과장이 직접 가 가지고 관리소장도 만나고 했거든요. 현재 이 상태나 환기상태도 봤는데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작년에 그 정도면 조금 과장한다면 마취될 정도예요. 작년의 냄새는 술

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약 보름전에 또 다녀왔습니다. 보름전에 다녀왔는데 정화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때 주위에 동네 노인분들이 약 80분이 모였습니다. 그날, 모여서 전부 다 하시는 말씀들이 거기 하자 부분에 대한이 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2층 올라가보면 계단부분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PVC파이프로 물이 다른 데로 밖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떤 장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놓다보니까 물이 계단 위에서 부터 비오게 되면 계속 다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그 빗물에서 미끄럽이나 이런 위험 소지도 있고 또 작년부터 지금 어린이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벌써 현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분들이 관리소측에서 빗물받이를 지금 안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지저분하니까 청소하려고 보니까 청소하는데 용역비를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빗물받이는 예산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저 밖으로 빼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강당 부분이 보니까 지난번의 여름에 봤을 때는 장판을 걷어내고 거기다 제습기를 설치하고 선풍기로 불어가면서 벽면에 지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완벽하게 됐다고 했을 때 당분간 어떤 시공상의 설계상의 이런 하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구 예산으로 해서 더 보수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다고 봅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몇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도 수삼차에 거쳐가지고 보수공사할 때는 그 이후에도 여러번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저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하자 지금 말씀하신 빗물받이나 강당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나 보강공사가 더 필요하지 않은지 하자라고 볼 수 없는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이렇게 말씀하

했는데 별도의 예산 확보로 해가지고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시공자측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承魯委員 시공회사 한미에서 해야 할 부분을 반드시 거기에 책임을 미뤄지지 우리 구청측에서 자주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청측에서 땀질을 할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文京周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모든 건축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죠?

○建築課長 尹炳圭 네. 변경되는 지역쪽으로 ...

○文京周委員 맞습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네. 맞습니다.

○文京周委員 네. 그러면 7월 13일날 도시 설계 지구지정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거기에도 똑같이 규제를 받겠죠?

○建築課長 尹炳圭 네.

○文京周委員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업자선정이 아직도 안되어 있는데 지연된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지 왜 5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업자선정이 안되었는지 그리고 가격 입찰 일시가 잡혀 있는지요. 그리고 3개 업체가 현재 선정이 되었다. 하는데 어느 업체인지 도시 설계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심리적인 재정적인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었으면 해서 제가...

○建築課長 尹炳圭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설계가 지역지구로 지정자체가 올 7월 13일날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9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그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시다. 받아 가지고

○文京周委員 7월13일부터 9월달까지 두달 동안 지연되어야 할 사연이 있나요.

○建築課長 尹炳圭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고

기일이 있습니다.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체 등록을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제출 내용 설명서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고 기간이라든지 내용 설명서작성 각 업체들로부터 기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진 사항이 아니고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서류심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관계업체 지정을 3개 업체도 제한하겠금 되어 있는데 3개 업체는 종합건설과 선진 엔지니어링과 우호 엔지니어링 3개 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바로 되면 내년 7월까지의 종료가 될것이고 설계가 도시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축 일반 건축업체만 신청이 되어 가지고 계약 안만 나온면 건축 공사에 도시 설계 사업에 지장만 없으면 건축이 가능 하겠습니다. ○文京周委員 그 가격 입찰일시가 잡혀 있나요.

○建築課長 尹炳圭 지금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드리겠습니다.

○文京周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보충 질의입니까?

○鄭昌萬委員 질의 할려고요.

○委員長 李鍊炯 질의입니까? 질의하세요.

○鄭昌萬委員 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장위2동 노인정공사 이외에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96년도 10월까지 5천 14만원에 20개의 시공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문화주택 이외에 20개를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공자만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 완료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建築課長 尹炳圭 시공까지 완료되었습니다.

○鄭昌萬委員 시공까지 완료되었다고요. 석판동 노인정 보수 공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시공완료 됐다는 이 서류는 거짓말이예요.

○委員長 李鍊炯 마쳤습니까?

○鄭昌萬委員 아니요.

○委員長 李鍊炯 계속하세요.

○鄭昌萬委員 석관동 지하청소 스포츠 센터라는데 우리가 입찰을 본단든지 이러면 되는데 내정가를 갖다가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해도 팬찮은 건지 물어보는 거고 아까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김순권위원.

○金順權委員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사설 위험물을 관리하는 동이 성북구에서는 24개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 양식상의 문제를 들겠습니다. 서류가 구청 행정인데 동별로 틀립니다. 양식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양새 있고 건축과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양식을 이론화 시켜놓지 않았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 긴급 규제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틀립니다. 이 규정을 보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규정을 해놨는데 정릉 3동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윤병규 건축과장님이 도시국장님께서 한번도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어떤 동같은 경우에는 다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네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A, B등급으로 표시한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느낀점들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명같은 것도 써놓지 않고, 도장도 안찍어놓은 것도 있고, 이것은 '윗분들이 확인하면서 작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같은 경우 처음에 공무원들이 위험하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해가지고 다 행정 조치를 주민들한테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사무소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귀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없음 같은 내용만 순차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묻

고 싶습니다. 순찰하는 날짜가 정해 지는 겁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무슨 날짜?

○金順權委員 사설 시설물에 대한 순찰날짜 예를 들면 6일에 한번 10일에 한번 있습니까?

○建築課長 尹炳圭 순찰 날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金順權委員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어떤 건물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하는 곳이 있고, 어떤 건물은 두달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해결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험정도에 따라서 순찰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建築課長 尹炳圭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委員長 李鍊炯 질의 마치셨습니까?

○金順權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김갑제 위원님.

○金甲濟委員 자료-111를 봐 주십시오. 기계식 2단 주차기는 사실상 '91년부터 구청 질문을 비롯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게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2단 주차가 과연 주차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셨는지 또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보는 것은 그것이 얼마간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이미 주차법을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단 기계식 2단 주차기가 1대를 주차 못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저나 여러분들이 보신것이 아마 동일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91년도부터 청장님한테 질문도 했습니다만 계속하는 얘기가 이것을 상부에 보내서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없애야 될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추차난이 심한데 주차기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2대가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대도 주차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실지 주무국이나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철폐시킬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위법 사항 적출건수 이행 강제 시정지시 제거건수가 4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단 제거를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 건축 적출건수에 속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은 이것이 분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이것이 저만이 아니라 똑같은 공동사라고 할적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垈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질문이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린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그러면 답변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노인정이나 사회 복지 시설 공사는 정창만위원님이 석관동것은 안 되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사업 계획은 전부다 복지과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땅이나 부지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해주면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관동 건물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해드리고 제가 오후에 가정복지과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鄭昌萬委員 주택과에서 설계만 해주는 것입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완료되었다고 하는것은 20% 완료되었다고 하는것은 가정복지과나 건축과에 요청한 것 중에는 다 완료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鄭昌萬委員 완료됐다는 것은 보고에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공사가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鄭昌萬委員 공사가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갖다가 다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고지 예산을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鄭昌萬委員 예정가로 자료에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예산이고 예정가는 별도로 나중에 입찰할 때 결정될 것입니다.

○鄭昌萬委員 다시 변동되는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괜찮은데 지금 석관동 지하청소 차고 스포츠 센터 부지가 4억 7천이 나와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됩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예산이기 때문에.

○鄭昌萬委員 예산이니까! 네.알았습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 다음에 김순권위원님께서 사설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부실하다. 등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순찰주기도 일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설자료에 제출을 보고해 드린대로 해마다 3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때 한번하고 우기전에 한번하고 동절기때 한번하고 하면서 전부다 점검요령이나 관리 요령을 담당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각 동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건축과에서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나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順權委員 구체적으로 일단은 필요한 것이 서류라든지 동별로 양식이라든지...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양식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보냈는데...

○金順權委員 그 다음 문제는 박석안(도시정비국장)님께서 구청에서 관을 채길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업무라든지 현실적으로 채기기 어렵다고 그런 부분은 체계화 자체가 가능하지...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저희들도 확인도 해보고 직원들 교육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갑제위원님의 기계식 2단 주차기의 실제 효용성과 그것을 말씀하시고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작년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단기 주차기를 차라리 없애면 차 1대라고 주차할 수 있는데 고장

난 것을 2단 주차기를 세워 놓으면서 차 1대도 못세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 법 자체에서 아직 안 풀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해 가지고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甲濟委員 아까 얘기한 대로 4건 4건이 무단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한거죠.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렇죠.

○金甲濟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법에 묶인 것 뿐이었지 법은 분명히 필요 조건이지 충족 조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했다면 이렇게 가혹하고 물리면서 단속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거라고 한다면 사실 4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안되는 얘기입니다. 묵시적으로 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기능을 못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까지 가혹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효용론이라든지 현재 이용 실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100% 동감을 하는데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현실의 사이에서 공무원은 법을 집행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해당업무에 법을 집행 안하면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위반해 가지고 범법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주차장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실제로 주차장 부분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 소요도 많은데 주차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번씩을 점검을 하는데 공무원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주민들 입장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공무원에 대한 동행인도 되어 주시고 울타리도 되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되고 공무원 신분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제시니까?

○柳興先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李鍊垈 보충질의입니까?

○柳興先委員 아니요. 건축과 하고 가정복지과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유홍선위원님 질의 하세요.

○柳興先委員 지금 건축과에게 시간 다된것 같은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앓고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과 소관이 부정한 것이 현실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암동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어린이 집이 있는데 그 공사 설계를 복지과로 가면 건축과에 넘기고 건축과에 가면 서류가 안올랐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설계를 우리동 주민을 이 정도는 아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3개 업체를 따로 따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공사한 것에 싱크대라든가 2중창 타일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내는데 5,200 나왔다고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8백이 더들 어간 지금 이렇게 6,000이 넘었어도 싱크대도 빠져버렸고, 2중창도 빠져 버렸고, 방충창도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때 신랄하게 이야기 할려고 구정 질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수의계약에서 우리 구청재정을 조금이라도 덜 손실시킨다면 수의계약을 주어야지 굳이 법해가지고 5,000만원 넘어서면 안된다 해가지고 입찰 변경 해가지고 6,000만이 넘어가면 서도 이런 시설이 빠지는데 계속 지금도 입찰변경만 할 것인가? 또 즉 말하면 재무국장에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야기 했어요. 재무국장은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입찰변경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어린이 집에 지금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갓태어나 가지고 첫발 뭘가 배우겠다고 어린이 집에 나와 있는 애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원풍기 가지고 난방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은 가스난방 시설을 해 가지고 이 겨울에 2중창문이 어디 있습니까? 홀창입니다. 가서 봐도 알겠습니다. 홀창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도둑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나눌 수가있나 중요한 물건을 나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원장보다 당신이 어느 정도 원장 입찰받으면서 쓴다. 했기 때문에

싱크대는 당신이 하십시오. 싱크대는 그 분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떠돌아가지고 바닥 타일을 했지 바닥 타일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식당 분식집만 허가 내줄려고 해도 우리 위생과에서 바닥 타일 안하면 허가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졌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이제는 민선제고 자치구 시대가 들어왔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단돈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지 굳이 입찰변경해서 6천만원 넘어가도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이중장 할려고 제가 알미늄 창을 때보니까 4백이 들어요. 또 즉 말해서 방충창 할려면 돈이 얼마 또 들어가고 이러한 이중적인 손실은 안시켜야죠.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도 동네사람이 하면 어떤 잘못이 되어 있으면 금방와서 수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책임추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살지도 않는 강남 서초구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굳이 입찰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 알아보니까 입찰경쟁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한사람이 업체20개는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이번에 A가 따면 B로 넘겨주고 B가 따면 C로 넘겨주고 이런식으로 입찰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에 얘기해서 입찰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柳興先委員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설계를 했다는데 명색이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는데 난방시설하면서 이중창이 안되면 앞으로 영하10도 15도 내려가는 엄동설한에 어떻게 견디니까? 어떤 설계자가 이중창없이 설계를 해요.

○委員長 李鍊炯 몇년도에 지은 것이 그렇습니까?

○柳興先委員 이번에 수리한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봄부터 계속 날이 따뜻할 때 하자고 하니까 복지과는 건축과로 하랬다. 건축과는 서류가 안 올라왔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 공사를 할려면 여름방학때 해야

되는데 굳이 얼마전에 끝냈어요. 애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버스에다 태우고 거리로 방황하면서 애들을 수용을 했어요.

가급적 이런 공사는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의를 끝낼까 합니다.

○委員長 李鍊炯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建築課長 尹炳圭 네. 안암어린이집 설계에 대해서 당초에 이중창 등 빠졌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설계 공사 이런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건은 주무부서나 각 해당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의뢰가 넘어와서 예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된 사항들이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계가 와도 저희들이 주무부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더 필요하고 예산이 더 소요된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차츰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도 유아원 용도나 유치원 같으면 방학기간에 해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같은 주무부서에다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지적을 안더라도 이중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올라오는대로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칠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42分 監査中止)

(14時07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鍊炯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丘在永委員 구재영위원입니다. 북악골프장내에 세차장이 있어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공식적인 절차상으로는 없습니다.

○丘在永委員 그러면 1-152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간이 세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이 세차장이 어떤 이유로 생겼으며 지금 변정숙씨와의 계약체결내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우리구에서 세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년도수가 몇년도에서 몇년도까지 돼 있는지 그것도 해주시고요. 변정숙씨와의 재판계류중에 있는 것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동익위원님.

○許東翼委員 돈암1동 허동익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운산 마스터플래닝이 완성된 이후에 개운산에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민원인들을 데리고 공원녹지과장을 만났을 때는 배드민턴장에 독길을 대통령이 와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철거를 3일간 연장을 한 다음에 철거를 했는데 지금 과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구의원이 갔을 때는 안되고 그 이후에는 독길을해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되게 낙송식을 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돈암3-2에 공원녹지부지가 몇평이나 3-2 재개발로 들어 갔는지 그 다음에 3-2로 인해 가지고 등산로코스가 폐쇄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이 그것을 허락을 한건지 그 배드민턴장 독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용 잡부인부를 녹지과장 지휘하에 며칠간 거기서 근무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그 건축을 못하기 위해서 소유된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해주시고, 길음전철옆에 있던 공원녹지를 용도 폐기 공원녹지를 3-2때문에 몇평이나 용도폐지 해가지고 3-2에 매각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과연 공원녹지과장이 30년 공직생활을 생명을 걸고 일했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지 공원녹지를 용도폐지하면서 돈암1동 성북구내에 공원녹지를 용도폐지

해야 되는지 앞으로 향후대책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질문은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홍선위원님.

○柳興先委員 방금 구재영위원의 제의와 마찬가지로 북악골프장 계약만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만기계약됐을 때 계약을 다시 해줄 것인가 다른 타인에게 계약을 해도 하자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文京周委員 북악골프연습장하고 관련돼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북악골프연습장 관리 약정서를 보면 북악골프연습장 관리 시기는 '95년7월15일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4조 위탁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95년도 1년간 위탁료는 금 8억5,027만5백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그렇게 7월15일자로 한다.'라고 돼 있지만 위탁료를 사정할 때에는 '95년7월15일 부터 '96년도 7월14일까지로 명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96년 위탁료 역시 날짜를 명시해야 되는데 '95년도 1년간 '96년도 1년간 이렇게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데에 관심을 갖고 계약서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구청에서 계약서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액의 요구에 저희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돼 있는 사항이예요. 금년도에 역시 그렇게 하지 않고 공원시설관리 위탁중만 교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이승노위원님.

○李承魯委員 이승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합니다.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가 각 동별로 엄청나게 많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로 인해서 동별로 이의제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무작정 계속 징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녹지과장께 질의합니다. 석관1동에 감나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었는데, 매년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기 보호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당히 튼튼하게 좀 많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보호대를 설치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 보호대가 어떻게 해서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됐는지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라고 주민들 10의 7, 8명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대를 만드는데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委員長 李鍊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구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악골프장에 세차장관계는 북악골프장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점점상 87-1에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에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3만5천㎡ 가량되고 현재 52타석인데 여기에는 간이 세차장을, 골프연습장 입구 바로 우측에다가 천막을 5m정도만 설치하고 한사람이 손으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즉시 시정명령을 했고 또 8월2일날 세차장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철거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8월5일날 저희들 위탁자 변정숙에게 세차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있고 해서 다시는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약체결관계에 대한 연간금액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서 '96년도에는 8억5천2백7십1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억5천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는게 좋겠다.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8억7천1백8십7만3천원의 금액이 나와

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완료하고 그리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계약체결의 연도는 저희들 당초에 2년간이었기 때문에 끝나는게 '97년도 내년도 7월 14일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변정숙건의 재판 제류중인 것은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그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지금 정식으로 통보는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승소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95년도에 8억5천 징수한 것이 자기는 너무 부당하다 많다 해서 이렇게해서 재판을 한건데 그동안 몇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난달에 승소를

○丘在永委員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11월20일 이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판결문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정식으로 소송수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만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丘在永委員 잠깐만요. 8억7천에 대한 금액은 우리가 계약하는 당시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 들어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이미 벌써 저희들이 그 금액은 전부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丘在永委員 말하자면 선불제군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왜 그러냐하면 공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만일에 돈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계속해서 체납으로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금액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丘在永委員 그럼 지금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체납된건 없군요.

○金鈴基委員 잠깐만요. 그럼 85년7월15일부터 87년7월15일까지 2년 수의계약한거 아닙니까? 그럼 '85년도 수의계약금액은 8억5천만원이고 86년도 계약금은 8억7천몇백만원입니까? 그럼 수의계약을 2년으로 하되 1년마다 계약금액은 당년도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95년도에 8억5천만원이 비싸다고 지금 소송한 사람이 '96년도에는 8

억7천몇백만원이... 행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금액이 너무 과중하다고 소송을 해서 말이죠.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이죠. 또 어떤 수익계약으로 다시 들어올 때 그 업체에다가 다시 줄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불신을 가지고 너무 과중한 금액으로써 8억5천만원의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반환청구소송을 한 사람들과 다시 또 연계가 맺어질지 앞으로 그러한 무엇인가 목제가 꼭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또 계약할 사람이 없어서 또 그렇게 연장계약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분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세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이미 작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린 바도 있는데 당초에 '95년도 그 당시에 계약을 2년간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을 정해서 그랬던 것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위탁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1년간씩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법에 그래서 1년간씩 받았습시다. '95년도에는 그 당시 8억5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수입을 잡았고, 그래서 계약을 해준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변경속씨가 너무 많다. 이 금액은 부당하다. 자기가 봤을 때는 약 5억정도가 적당하다. 이런것이 큰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쪽 재판을 해 오다가 지난번 11월 22일에 최종 고등법원에서 이 이의사항이 이의가 없다. 하고 적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8억7천으로 저희들이 그 임의로 결재를 한게 아니고 감정원에 용역을 켜가지고 8억7천2백만원이 적당하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납부를 해라. 이것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를 받고 그리고 공원관리국들의 위탁증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대책은 그 기간이 '97년도 7월 14일날 끝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시다만은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여러 모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아무런 마찰없이 나가도록 할 수 있는가? 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7월 14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계방침으로서는 공개입찰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鈴基委員 그러니까 그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몇년 기한이 지났어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수익계약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 사람들을 대비하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여기에 보면 공원관리위탁증에 금년도에는 공원관리위탁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공원관리위탁증을 교부하기 전에 계약서를 서로가 맺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공원법에 보면 공원관리의 시설을 빌려줄 때 공원관리위탁증만 주는 걸로 끝났습시다. 그런데 고등재판을 해보니까 공원관리위탁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가권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사항을 지시한 민원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할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95년도에 관리위탁증을 주기전에 동등한 그런 사항으로서 서로 계약서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승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도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계약을 맺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당시에 적당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승소한 점니다.

○柳興先委員 위원장! 여기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좀 주세요. 끝난 다음에 하세요

○金鈴基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유홍선위원님!

○柳興先委員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잘했기 때문에 승소했다. 이러는데 '95년도에 진짜 계약을 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법원에다가 무슨 소장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을 무엇인가 석연찮게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법원에다가 지금 고등법원에다가 자기들이 소장도 냈던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지금 '96년도에도 '97년도에도 8억5천만원이 비싸

다고한 사람들에게 8억7천만원을 갖다내라고 제계약을 하려면 내라고 그러한 소스를 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그런 사람들 아니면 계약할 사람이 없어서 자꾸 거기다 흥정을 합니까? 이것은 애당초에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골프장 하나를 계약하는 것에 이렇게 말쟁이 생긴다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이의제기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빌딩같은데 이런데 예를 들어 회사같은데 계약을 주면 그렇게 계속 물고 들어간다면 누가 임대 한개라도 놔먹겠어요? 못놔먹지. 무엇 인가 철두철미하게 잘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어딘가 석연찮으니까 8억7천만원이 비싸다고 항의한 사람들에게 또 '97년도에 8억7천만원에 다시 계약을 해 또 여기에 연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조금전에 건축과 과장님하고도 이런 몇마디 했습니다만은 수의계약 말고 공개입찰계약이라고 공직자의 여러분들께 죄송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공개해서 공개입찰해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은 공개입찰 안습니까? 다른 것 구차원에서 진짜 돈나올 것은 공개입찰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배짱 부러가면서 공개입찰해서 자기 수입에 타당성이 있으면 계약할 것이고 자기들이 연간해서 자기들 수입이 없으면 계약을 안할텐데 왜 이런 것을 자꾸 공개입찰을 앓고 그냥 수의계약을 해주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왜 제가 지금 반문하나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계약을 잘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잘 했다면 이런 일이 있어요? '95년도에 8억5천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8억7천만에 또 계약을 하려한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또 계약을 하고 또 말긴다 이말입니까?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은 계약끝내고 더이상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진짜로 입찰경쟁해서 계약해 주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결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문경주 위원님!

○文京周委員 처음에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었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2년으로

○文京周委員 금년은 계약금만 사용료만 다시 재책정하는데 계약이 연장된 거죠? 연장선상이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文京周委員 금년에 8억7천1백8십7만8천원을 위탁료로 받으셨는데 그 설치비가 8천만원 이거든요. 이 설치비라고 하면 어떤 설치 그물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文京周委員 설치비가 8천만원에 시설물 설치비 8천만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8억7천1백8십7만8천원에서 거기에는 8천만원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文京周委員 그 설치비가 무엇인지.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 8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그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타석의 그물망이라던가 또는 공 수집기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못한 부분들을 당초에 설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비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금년도의 위탁료에서 공제를 해 주겠다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통보한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은 꼭 우리가 설치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그런 내용들을 공제한 사항입니다.

○文京周委員 그러면 설치비 내용이 있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文京周委員 시설명목에 그물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물망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물망은 우측에 저희들이 원건물에 모든 그물망은 전부다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그 우측에 안된 곳에서 있는 그물망을 다시 더 쳤었습니다.

○文京周委員 그러면 이 시설비가 예를 들어 소모성시설비도 있을 테고 영구적인 시

설물도 있는데 8천만원 시설비라고 하면 적지않은 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이 명세가 있으면 그것을 제가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京周委員 그리고 7월 11일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입금받은 것은 7억9천1백8십7만8천원이죠? 거기에 포함해서 8억7천1백8십7만8천원이 되겠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文京周委員 알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다음은 허동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다. 개운산에 마스터프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운산 근린공원은 전체가 3백6십4필지로서 전체면적이 3십만9천㎡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가 약 34%, 사유지가 약 60%되는데 여기에는 현재 시설비베드민턴장이라던가, 농구장이라던가,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이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이 당초에 그 도시계획은 '71년도에 지정이 돼서 작년도에 시에서 일제히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작년도에 끝나고

○許東翼委員 잠깐만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요지만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다 맞고 계획서를 우리가 다 수렴한 사람들이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개운산 장을 지금 아마 덮개를 씌우는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어떻게 돼가는가 그 다음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비도 들었습니다만 생활체육과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습니다. 그 뒤에도 행사를 한 다던가 이렇게 해서 전부 앞으로 이 공원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될 때까지는 철거를 하겠다. 그러한 방침으로 생활체육과에서 그 덮개를 씌우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許東翼委員 네. 그 부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생활체육과에 지시를 받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존속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그

당시 민원인들을 모시고 갔을 때는 이것은 대통령이와도 안되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끌고 이것은 30년 공직생활을 걸고 이것은 할수 없다. 그 당시에 상당한 고용인부들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낭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낭비된 금액은 얼마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이겁니다.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거기에 있었던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그 권고를 했습니다.

누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2차, 3차에까지 걸쳐서 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으로 자행이 돼서 이러한 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이 민원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許東翼委員 네. 그러면 구의원들이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행정부에 협조를 하면서 행정부의 방침에 옹하도록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구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외에 민원인들의 소요가 너무 심하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모든 법규를 위반하고 집행을 했다. 이겁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지 그렇게 불법으로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許東翼委員 지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許東翼委員 합법적인 절차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결제가 난 것입니까? 전결사항이 국장전결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결제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것은 생활체육과에서

○許東翼委員 생활체육과 과장전결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글썽 그 당시 생활체육과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

회들한테 협조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협조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許東翼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행정이 서로간에 미루면서 하는 행정입니까?

그러면 구의원들은 동대표로서 그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은 민원을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아는 것이 없고 생활체육과에서 협조공문이 들어오면 하고 그것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된건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답해주시시오.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이것은 불법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경하게 이러한 것을 단속을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셔야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許東翼委員 불법으로 했으면 그것을 조성 안시키면 될 텐데 불법이 자행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존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金鈴基委員 잠깐만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불법이나 그 지역의 공사장 증축관계로 운동을 할 수 없어서 민원인들이 공사가 끝나는 기간까지라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해서 임시로 바람막이라던가 이것을 했는데 공사가 끝나면 그것을 철거해주는 조건이라고 하셨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자진철거합니다.

○金鈴基委員 자진철거 그러면 저 뒤에는 지금 공사장으로 인해서 분진으로 인한 또 옆에 소음 여러 가지 등등이 피해를 주고 있으니 그 기간만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민원때문에 임시조치로 공사가 끝나는 기간까지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것은 생활체육과에서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생활체육과에서 지시를 해가지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金鈴基委員 그렇게 답하시면 되는데 자꾸 법법하니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는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는 것을 생활체육과에서는 해줬다니까 “법은 여기에는 적용받고 생활체육과에서는 법을 적용받지 않느냐?”해서 자꾸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답을해서 간단간단 일목요연한 답을해서 끊고 넘어가야지 자꾸 길게 끌면 오늘 공원녹지과의 질의로서 끝 납니다. 제가 다른 질의도 있는데 너무 길게하지 말고 답을 해주세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許東翼委員 지금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타당한데 지금 본위원이 또 쫓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이 법이나 생활체육과에서 어떻게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분진과 모든 소음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의원들이 민원인들을 데리고 ‘그동안 만이라도 감안을 해주십시오’하고 부탁할 때는 그게 안되고 생활체육과에서 협조가 들어올 때는 되고, 그러면 어떻게 구의원들이 민원가득이나 많은 동네민원을 어떻게 수렴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 구의원들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행정부에 어떤 업무를 상당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제도 하고 있지만, 행정부에 모든 민원을 대신 감내하고 대신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간추리고 간추려서 우리는 구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구의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몸소 바쁜 시간 사비를 들여가지고 구청을 찾아갔을 때는 절대불가 그 다음에 며칠시간이 경과된 다음에는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온 구의원은 도외시하고 그 민원인들의 개별로만 상대를 해가지고 덮개를 잠정적으로 허용한다. 그런 조건이 하에 했다. 이거죠? 잠정적으로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것은 감사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됐습니다. 허동익의원님! 됐습니다.

柳興先委員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잠시만요. 보충질의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柳興先委員 그러니까 같은 청사내에 있는 생활체육과에서 얘기한 것은 들어주고 구의

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말한 것은 안되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같은과니까 같은 청사내니까 생활체육과에서 한 것은 들어주고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민원인들하고 구의원들이 가서 얘기한 것은 묵살시켜 버리고 이래도 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기간을 달라고 해서

柳興先委員 그러면 지금 생활 체육과에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았냐고요?

○委員長 李鍊炯 네. 유홍선위원님! 똑같은 질문이니까 답변들은 다음에 보충해서 질의 하도록 그렇게

○柳興先委員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끝나지 구지한 변명을 하려고 구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고 생활체육과에서 한것은 되고,

○委員長 李鍊炯 네. 답변하세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과 현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행정의 묘가 있지 않냐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법법과만 따지다보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해소해 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자치시대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풀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운산 설치허가도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얘기한 바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원칙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개운산에는 마스타플랜도 세워져있는데 베드민턴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민턴 동우회원들이 성북구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현재 문제가 되는 베드민턴장에 뚜껑을 덮는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베드민턴장에서 임의로 설치하다가 우리 구청 단속 공무원들에게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아마 허위원님도 몇차례 가서가지

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의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한군데 베드민턴장의 덮개를 해주다보면 다른 많은 여타의 베드민턴장이 있는데 공원에 전부다 그런 가설건물들이 난립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고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철거를 하고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생활체육과의 일단 민원이 들어가고 구청에서 직접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실정법적으로 녹지과의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풀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리고 구청에서 우려하는 것도 개운산공원 전체가 이런 건물로 난립 대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는 안하느냐 여기는 실제로 거기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데는 거기 한군데였습니다. 허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 스스로가 우리 구청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시켜 주고 또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서류를 요청해라 해가지고 아마 그 개운산공원에 있는 베드민턴 동호인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여기는 실제로 재개발 사업하면서 바로 공사장이 붙어있는 거니까, 여기는 직접 피해를 입고 있으니, 전체 연합회에서 비록 법으로는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다른데는 절대로 설치하지 않겠다. 여기 직접 피해를 보는 이 동호인들한테는 구청에서 재개발 사업 기간내에 다소 좀 양해를 해주면 나머지 우리 '동호인들 스스로가 단결해서 하지 않겠다'하고 우리 구청에 공식적으로 서류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서류로 정식 접수한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관리를 하는 공원과쪽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민원해소 측면에서 이 동호인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과에서 나머지 동호인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인정해 주자'하는 구청차원에서의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말생이 되는 그 부분에만 한시적으로 공사기간 동안 가림막을 해놔다가 공사가 끝나면 자진철거

하는 걸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호인들이 절대로 유사한 시설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동호인들 전체로 연합해서 각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사후에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못하고 위원님이 우리 구청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민원인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사전대비를 못하고 사후에 대비한 꼴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만 한시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許東翼委員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 건축물 하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못하게 하는데 들은 경비 공무원들이 동원된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거기는 별도로 경비는 들어간 것이 없고 저희들의 공익 근무요원들이 순찰을 하고, 또 저희들 산림감시요원들이 순찰을 하는 이런 사항이지 별도로 거기에 따른 돈이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허동익의원님 이해하겠습니까?

○委員長 李鍊炯 허동익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허동익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한 분이니까 사전에 만나가지고 상의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미처 생활체육과에서 진행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유의해 주셔야지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승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연습장 만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 '97년도 7월 14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전에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님이라든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현재있는 변경수지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공개입찰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승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관1동의 감나무 보호대를 설치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관1동의 감나무 보호대 설치하는 양식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희들이 양식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지형과 감나무 자체 지형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보호대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감나무는 또 서울지방에서 동해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동해대책의 일환으로서 감나무 보호조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놓고 조 쌓기가 어려워 서 그것을 철거를 했다가 일단 내년도에 다시 봄에 해동과 동시에 조쌓아놓은 것을 전부 풀고 그리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보충질의 하세요.

○李承魯委員 그럼 매년 두번씩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풀렀다 감았다.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감나무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95년도 '94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완전히 활착이 되면 별지장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李承魯委員 활착이 되면 뭐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호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호대 나중에 어디다 쓰실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보호대는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그런데 감나무 보호대를 어떤 구상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약 7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李承魯委員 7백만원이요? 그런데 그거 와서 보셨지요? 그런데 괜찮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글썽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몇개 설치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보호대를 아마 주민 열이면 열이 그거 다 잘못됐다라고 욕

설을 많이 해요. 행정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한다고 어떻게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쪽면에는 감나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형적인 조건 기후적인 조건해서 매년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죽어가면 감나무를 거기다가 계속 감나무를 보식할 것인지 거기에 기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로 교체를 할 것인지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지형적 요건이라던가 토질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더욱 보식을 해서 그 거리를 감나무거리로 만든다든지 이렇게해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承魯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환경을 갖기 위해서 유실수도 심었고, 여러가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몇그루 안되는 감나무로 인해서 구의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계속 소모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許東翼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허동익 위원님

○許東翼委員 서두에 3-2에 공원녹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몇회배나 미납했는지 말씀해달라고 했고, 용도폐지함에 있어서 심어 놓은 나무 그것은 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용도폐지를 가면서 까지 3-2에다 매각처분을 해가지고 빌딩 시멘트숲을 만드는 원인이 어디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거기는 길음교 녹지대인데요. 거기 길음교 녹지대는 거기에 대한 나무는 전부 다 이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許東翼委員 길음교가 아닙니다. 3-2 형설학원 뒤쪽에 우리 돈암1동에 유일하게 구에서 만든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몇평이 되고 그 다음에 개운산 등산로 코스가 3-2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 지역이 3-2 저

희들이 공원용지가 아니고, 녹지로서 3-2지역내에 녹지대를 조성을 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2의 재개발 지구에서 자기땅이니까 거기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나무이식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외에 11종에 대해서 천공 36주를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해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許東翼委員 아니 우리 구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 나무를 심었으면, 그러면 공원으로 녹지로서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다른 대토를 해주는 방법을 하더라도 어떻게해서 앞으로 자꾸 녹지화 시기가 되는 이런 정책이 펴지고 있는데 녹지를 없애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보충을 시킬 것이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3-2에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개운산이 현재 일부가 들어가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일부가 밑에 지역이 약간 포함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東翼委員 개운산이 등산로가 폐쇄되고 3-2에다가 편입이 되고 있지요? 지금 녹지과장이 그부분 모르십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당초에 돈암재개발 구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암지구 재개발 구역이 1973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지정될 때 돈암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역 4개구역으로 쪼개어졌었습니다. 위원님들이지역에 오래 계시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73년도에 지정될때만 해도 현재보다도 훨씬 더 위에까지 무허가 건물들이 뽕뽕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계를 돌아가면서 2-1, 2-2, 2-3은 주택개발 지구로 책정을하고 2-4지구는 그 위에 지금 현재 2-3하고 2하고 3 그위에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공원회복 지역으로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수종갱신작업 해가지고 나무 심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973년도에 구역지정되고 지구계획이 분할되면서 현재 2-2, 2-3 그것은 그위에 있는 집들을 전부 철거를 해서 끌어내리면서 그위에 지역은 2-4구역은 공원회복 지역으로 지정하고 2-2, 2-3은 그 당시에 주택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비에도 위원님들한테 97년도 예산심의를 받겠습니다만은 도심에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지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쓰레기가 방치되고 오물이 투기되고 청소년들 불량집단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인 사유지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의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녹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역이 당초 '73년도에 이미 택지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구계획 분할까지 다 되어 있는 지역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환경이 나쁘니까 저희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나무를 심었던 것이고요. 그 땅자체가 이번에 2-3에 팔았거나 매각한 것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許東翼委員 이번에 3-2의 공원녹지는 매각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것은 다른 구역하고 똑같이 재개발 구역으로서 택지주택 건설이 예정된 지반에 있는 국공유지는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안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계획 분할하면서 그위의 지역은 공원회복지역으로 해서 건물을 전부 털어내고 공원을 다시 만들었고 그 밑에는 주택지로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허동익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許東翼委員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를 가지고 왜 3-2에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마당에 공원녹지를 가지고 파괴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돈암재개발 구역을 4개 사업장지구로 지구계획 분할을 하면서 공원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3-2, 3-3 그위에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허가 건물들 있는데 그것은 그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서 정비해서, 내리면서 공원으로 회복을하고 지금 현재 3-2, 3-3에 있는 것은 이미 1973년도에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都市整備課長 黃義泰 도시정비과장 황의태입니다.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성북구로 '96년 11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시일이 촉박하여 감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업무 파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저의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에 대해 이번 회기 만큼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제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鍊炯 제장님이 대답해 주시겠고요.

○都市整備課長 黃義泰 네.

○李承魯委員 그럼 답변 질문을 이제 오셔서 답변을 못하시면 자리에 앉아 있을 이 유가 없어요.

○都市整備課長 黃義泰 답변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자료가 준비 되어 있는데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못합니까?

○金順權委員 이런 방법을 하죠. 법상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무관이 답변할 수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장님이 상세하게 아시는 부분들은 하시고, 이런식으로 절충한 방법으로 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죠.

○都市整備課長 黃義泰 네. 설명해 드릴게요.

○委員長 李鍊炯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두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

○金甲濟委員 자료 1-8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로, 중로, 소로로 표시가 되었는데 대로 중로 소로가 몇 cm씩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羅光洙委員 몇 쪽이라고 했죠.

○金甲濟委員 1-84쪽요. 20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로7곳 중로 2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디 어디인가를 답변을 주시고 기존 도시 계획도로 중에는 4m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지금 현황과 내역이 다르기는 합니다. 도시계획도 현황에는 4m가 있고 또 다른데에는 여기 지금 현황에 있고 도시 계획도로 내역에는 4m가 빠져있습니다. 어찌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4m 이하도로도 지금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안맞는거죠. 통계가 안맞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20m 이상은 시비요 20m 이하는 구비라고 합니다. 20m의 아주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20m 0.1이하 이상인 것인지 20m부터 이상인건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다음 질의 하실분. 김순권 위원님!

○金順權委員 먼저 하세요.

○鄭昌萬委員 제가 먼저할까요? 보충 질문하고 녹지과에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갑제 위원님께서 말하신 미집행 도로 년도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년 이상이 39건입니다.

총계는 65건이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성북구에 이관되어 있는 것이 현재로 보면 대로 중로 빼고 소로까지 36건 이상이 됩니다. 20년 이상이 된 것이 이것을 여태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여태 해제되는 문제 속에서 지금 신문보도 같은데 보면 20년 이상 서울특별시, 경향일보에 보면 서울 특별시에도 도시계획 땅을 전부 해제시키겠다고 나왔습니다. 성북구자체가 작년 제작년부터 이관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해제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것은 무엇이며 지난 95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행정감사때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장기 미집행 침해로 우려되는 바 대책장구를 하겠다고 처리 내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처리 내용

을 보면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96년 12월 중순에 용역완료할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1년간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상당히 일을 여태까지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관동에 주거지같은 경우는 20년이상 되었는데 빨리 해제시켜서 구로 이관되어 있으면 20년미만은 구에서 다 할일 아닙니까? 빨리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생활권이 침해 당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책과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녹지과에다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녹지과는 보충질의니까 그것만 하시고.

○鄭昌萬委員 이것만 할까요?

○委員長 李鍊炯 보충질의때 하세요.

○金甲濟委員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 버렸어요.

○委員長 李鍊炯 보충질의때 하세요.

○金甲濟委員 보충질의때 할 것이 아니예요. 한 부분이 빠져 버렸어요.

○委員長 李鍊炯 보충질의때 시간 드릴테니까 그때 하세요.

○金甲濟委員 간단하게 한다가 연관된 거라서 자료 1-89를 보세요 아주 이 부분을 보면 조령모개라는 현실감 나는 얘기를 씁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 계획도로 위반 및 해제가 있는데 6건이 올라왔는데 4건이 지금 1년미만에 위반했다고 해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과 그렇게 줄속 처리할 수 밖에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김순권위원 질의하세요.

○金順權委員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장기적인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 가지고 10조 상당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북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질의했다시피, 그 문제

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검토의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물겠습니다. 풍치지구 문제입니다. 국정감사때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종암 2동같은 경우는 풍치지구가 해제돼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했었는데 구에 있어서는 풍치지구 해제에 위한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우리는 매년 몇 건씩 도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 성북구 발전 마스터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 마스터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규태 공원녹지 과장께 물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꽃심기를 했습니다. 꽃심기를 했는데 그 분야에 보니까 성북·종암경찰서 계단에다 꽃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성북·종암경찰서 계단에 우리 성북구 예산으로 꽃을 심어준 것이 예산을 적절한 집행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말씀을 물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는 용도지역 분리에 봤을 때 녹지가 21.2%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5.6km 그것을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녹지 보존이나 생활 차원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원님이 생각하실때는 녹지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녹지보존에 우선한 정책적 보완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질의하실뿐 계십니까? 네. 김영기위원님.

鄭昌萬委員 녹지과에 하는 겁니까? 보충질의만 받는 겁니까?

○委員長 李鍊炯 질의를 받는 겁니다.

鄭昌萬委員 질의 전체를 받는 거죠.

○委員長 李鍊炯 질의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金鈴基委員 질의가 너무 많으면 답변을 듣고 다음에 저한테 우선적으로 질의를 주십시오.

○委員長 李鍊炯 질의 하세요.

○金鈴基委員 지금 할까요?

○委員長 李鍊炯 간단하게해.

○金鈴基委員 저는 종암1동 김영기위원입니다. 황의태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물겠습니다.

황의태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

은 저희 종암동에 지금 소방도로, 제가 서툰 그림을 한 번 그려봤습니다. 종암동 앞마울 길입니다. 앞마울 길이 12m올라가서 개천빌라에서 여기서 그렸습니다. 종암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그렸습니다. 동사무소 주위에서 78번지까지 그려놨습니다. 금년, 잘못했는데 투자 사업비를 보면 이 부분에 통일교가 있습니다. 주택쪽만 그려가지고 여기서 아마 사업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57-39, 57-69 이 선까지 저는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만큼 12m가 길이 터진다면 여기 중간에 가서 190m에 가서 도시 계획은 들어 있으나, 증장기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가서 짝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해 나둘 것인가 이게 왜 증장기 계획에서 빠졌는지 거기에 제가 의문시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차는 이렇게 소통이 돼야 합니다. 소통이 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간에서 꼭 가운데 처럼 짝막하게 빠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저는 정비국장·과장님께서도 저하고 동감을 하시는지 종암동 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까라는 종암동 약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고려아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마 구의회 회관의 부지로서 확보된 지역입니다. 여기서 불과 150m 이내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려 아파트 막장길에서 개운산 순환도로가 불과 150m를 거리를 두고 길에서 우리가 만약에 고려병원이나 보문동 성북구청 방향을 돈다면 78번 일대에서 이 길을 이용하면 여기는 10분 이내로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종암로 길을 체증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안암동으로 보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당장 재원이 없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희망을 안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 대교라도 넣어 주십사하고 했는데, 맨날 공원녹지법에 어째서 안되고 어째서 안되고 자꾸 안된다는 쪽으로만 빠져 나가거든요. 이 부근에 대해서 본 위원과 동감하는지 종암동 약도가 잘 안보일 거예요. 이걸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

다.

○委員長 李鍊垌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이 부분은 왜 빠졌나 하는 말씀이죠.

정창만위원장님.

鄭昌萬委員 도시 과장님께 물겠습니다. 길음교에서 미아리 구름다리까지 가로수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느티나무가 95년도에 1천8백11만3,000원에 되었고, 주당 36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주가 현재 하자 수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96년도에 느티나무가 22주 중에 금액이 8백84만2,000원에서 40만1,947원씩 일주당 단가가 매겨져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느티나무 심은 것이 96년도 심은 것하고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즉 뭘 얘기하냐면 규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장 몇cm가 있을 텐데 95년도 기장은 얼마나 했으며 96년도는 규격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가차량 구입을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구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왜 안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이 가로수라면 일정 규격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연도별로 차이가 온다면 우리 동쪽에 미아리고개 구름다리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 느티나무쪽으로 가로수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제대로 나무를 식목해서 테두리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책과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입니다.

○委員長 李鍊垌 한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기찬위원장님.

○趙基燦委員 동료위원들의 의정활동 때문에 저같이 나약한 사람은 발언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녹지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5가지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중복된 문제도 있고 해서 3, 4가지만 골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0년도 사용 일지 자료 1-175페이지 있습니다. '90년도가 1995년 10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이 시간당 6톤이상의 나무를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단적인 예가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노란 푸대로 쌓여있는 것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고 낡은 것은 시간이 걸린 부분입니다. 이것이 금년 1년에 한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목재를 파쇄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거기에 마른 나무가 성북구에 가로수 전체를 한다든가 도로 공사에서 가로수 나무를 파쇄하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3천 백만원씩 거금을 들어서 장비를 왜 이렇게 사용 안하고 계시는지 인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까지 그 자리에서 즉시 파쇄를 해가지고 즉시 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고 겨우 일한 흔적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귀중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고 이렇게 겨울철에 뽕뽕 마른나무가 화재가 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관리사무소 담벽축소 재할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월곡 근린공원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96년 6월 4일 2시 50분경 순천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불량청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소가 콘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청소년들이 월곡 근린공원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민들이 불량 청소년들 때문에 그야말로 생활 휴식공간을 해야 할텐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6월 4일날 불량배 6, 7명이 위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도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월곡 근린공원 치안 공백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관리소 직원하나만 보안을 생각했고 월곡 근린 전체 주민들이 치안 공백상태에서 치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접근하지 않

고 그런 사안이 2m 30cm되도록 담을 둘러서 쌓아 버렸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건물에다 둘러서 쌓아 버렸어요. 그래서 관리 사무실은 없어지고 벽돌 남은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담을 쌓아야 하는데 그런데 관리 사무소를 뺀 둘러서 높은 2m 30cm 담을 쌓아버리면 관리소의 내용은 전혀 없어진다. 또 보기도 싫다. 그 뒤에 중앙경찰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관리사무소가 바로 여기서 초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좀더 접근한 방법이 근린 공원 치안 공백상태를 치안 당국과 협의를 해서 예방책을 세워야지 다만 세워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세번째 '95년 12건 '96년도에는 29건이 나왔습니다. 고발을 어떻게 해서 무슨 제목으로 고발했느냐 했더니 도시계획법 물론 도시계획 관할구정이 해야 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시 위반사항입니다. 행정지시 위반이 무려 21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목 몇 그루 했다는 전부 고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녹지행정에 있어서 물론 업무도 분담하고 참 분쟁도 많고 했지만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설득하고 이렇게해서 가급적 주민편에서서 사고하고 행정을 해야 할텐데 너무 지나친 고발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무 행정과잉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일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지시 위반에 대해서 고발만 해 버리면 처음 1건하는데 100만원 이상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1사람 뿐이 아니라 소속된 10여명이 고발을 당하면 약간 기본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지방자치와 주민과의 거리가 소홀해지고 따라서 주민이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원망도 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가만히 가지고 가급적이면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고발이나 고발전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월곡근린공원 팔각정에 사실상 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녹지과장님이 대단히 노력해서 설치했는데 물이 안나옵니다. 예산이 7백80만원 들었

는데 물이 안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을 안가지고 왔는데 관청에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조잡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조잡스럽게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물이 안나오는데 그 이유는 왜인가 이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委員長 李鍊炯 질의하실 위원님 제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柳興先委員 공원녹지과장에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건인데 설치가 7종24정 수목이 1천9백27주 식재를 했는데 어느동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사를 했는지 또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어디 놀이터에 공사를 했는지 이것의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약 15분간 감사증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鍊炯 약15분간 감사증지를 선언합니다.

(15時34分 監査中止)

(15時53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鍊炯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됐습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도시정비과장이 지금 부임한지가 만 이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서는 담당국장이 총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승노위원께서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너무 많지 않느냐하는 민원과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체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것에 96페이지에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광고물이 전체가 1만8천9백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된 광고물이 1만2천2백90건이고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6천6백10건입니다. 이 6천6백10건 중에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전산입력까지 다 완료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허가만 받으면 규격이나 내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라는 절차만 이행하면 구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있고 그것이 4천6백65건이고 광고물 규격이나 내용자체가 전혀 광고물관리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로서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광고물이 1천9백4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광고주들에게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당신들은 내용이나 규격은 맞는데 허가를 안 받았으니깐 빨리 적법하게 허가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가를 안내를 하고 또 법에 위반된 광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일선 공무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규제나 단속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웬만하면 내가 구청장을 내손으로 뽑았고 내가 구의원, 시의원을 내손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기대심리가 사실상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활동하시면서 그런 고충을 많이 겪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단속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건축관계에서도 답변 올린바와 같이 법은 일단 악법이라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이 돼야하는데 자꾸 기대심리가 너무 높아지면 실제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 본다. 이런 또 사회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를 해가지고 허가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은 신청만 해주면 이행강제금 과태료만 부과하고 나머지 허가를 다 처리해서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나 규격이 맞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꾸 고발을 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소요도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소모도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안내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표에 나온 것 처럼 4천6백65건은 한번 허가절차만 밟아주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저희들이 제도해 가지고 허가처리된 광고물이 5백여건밖에 안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도 행정에 호응하지 않는 광고물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발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구청의 의견입니다.

○李承魯委員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가요건 구비만 갖추면 해줄 수 있는 건이 4천6백65건, 그런데 이 건수들이 앞으로 허가요건은 충분히 되지만 이 업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나 이분들은 간판을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전년도에도 말쑥드렸지만 8가지 9가지 이상의 서류구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건물주가 여기 살지 않고 강남이나 다른구 또는 지방에 사는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가지고 건물주의 서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몇가지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하며 원래 그렇다면 업소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세우게 되는데 제도적으로 업소의 허가를 특허시에 차라리 간판허가 구비서류가 첨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계속 무허가에 대한 불법광고물이 없을 텐데 그걸 계속 방치해 두고 그러니까 간판업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반업소로부터 어느 간판업소는 면허세까지 같이 포함해서 간판제작비를 받아가는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가지고 나중에는 그 업소에 대한 무허가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은 안나오게 간판업소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치가 되요. 어느 후엔가 다시 이제 이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도적인 방법이 만들어 있지 않으니깐, 행정부에서는 계속 방치해 둡니다. 지도감독을 "틀림없이 하신다"라고 하겠지만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영업을 하려고 간판을 세워놓았는데 나중에서야 그 간판에 무허가 불법이다 철거한다 과태료 부과를 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합정을 만들어 놓은듯한 오해를 하기 쉬운 이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6천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보다 월등히 더 많이 있지 않느냐 현재 동에서 민원들어오는 것이나 각 업소마다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보면 과연 6천6백10건을 본 의원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킨 업소 지금 독촉장이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가는 업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인근 업소에서조차 마찬가지예요. 누구 내면 되겠다. 관리에 적법한 것인가 전혀 홍보없이 갑자기 이것이 지금 부과됨으로써 이런 주민들의 민원상황이 상당히 야기가 되고 또 간판허가를 득했을시에 면허세부분이 매년 징수가 되지요. 허가냈을 때 매년 나가는 세가 무슨 세입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지금 광고물과 관련해 가지고 허가낼 때 수입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간판규제에 따라 다른데 보통 2만8,000원입니다.

○李承魯委員 매년 나갑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2만8,000원이고 다음에는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李承魯委員 그것은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적법하게 세금도 내고 그러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저희가 세금으로 징수한 것은 없구요. 간판허가가 3년마다 조건부로 합니다. 그래서 수입수수료를 많이 징수하기 때문에 세금나가는 것은 없고 단 간판이 도로를 점용했을때 그 도로점용된 간판에 한해서만 도로사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점용부분은 다른과 소관이니까 그때 할 것이고 일단 간판허가를 특허한 후에 3년마다 갱신을 한가요? 3년에 한번 하던지 5년에 한번 하던지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한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세금은 아니구요. 허가낼 때 절차상받는 수입수수료입니다.

○李承魯委員 처음에 허가특허할 때 얼마나

듭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처음에 수입허가 절차받을 때 수입수수료가 2만8,000원 그다음 간판이 안전하게 달려 있느냐의 위탁점사기관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1만5,000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그럼 3만얼마 들어갑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2만8,000원하고 1만5,000원해서 4만3,000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네. 그런데 저희 업소도 마찬가지로 15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묻는게 아니고 수수료 등을 냈다면 적법하게 간판에 대한 것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간판이 현재 달려있는데 주위에 거리에 대부분이 가로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거의 안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총괄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가로수문제까지 앞으로 병행해서 간판업소에 대한 보호차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 지금 과태료 징수된 부분 앞으로 끝까지 이것을 징수를 시키겠다던가 아니면 "구제의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든가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고, 그 간판 보호차원에서 가로수 정비 앞으로 플라타너스 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 그런 부분까지, 한가지 더 추가해서 답변을 주세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저희가 도시를 형성하는데서 환경적인 요인이 가로수도 중요하고 간판도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을 허가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정책이 공무원들 개입을 줄이고 민원업무를 간소화하려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간판을 달 때도 건축과에서 구조물에 대한 허가 받는 것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허가 받는 것 전부 이원화돼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법개정이 돼가지고, 광고물 심의 받아가지고, 광고물 허가 받으면 일괄처리가 제대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에서 특히 증소형건물이 밀집되어있는 성북같은데는 간판이 너무 난립돼 가지고 오히려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간판 설치하면서 중요한 요소가 안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나라는 해마다 태풍이 몇차례씩 오고 큰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간판이 부실하게 설치되면 뜻하지 않는 인명사고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적법하게 허가된 건물의 간판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관에서 간판 하나 하나를 보호해준다. 하는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가로수가 간판 어떤 특정인의 간판이라든지 특정인의 건물을 위한 가로수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아마 우리 서울에 있는 가로수가 제대로 남아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가로수가 교통신호 표시판이라든지 어떤 일반 공익에 저해할 경우에는 가로수가 이식도 되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건물 하나하나에 간판의 시각확보를 위해서 가로수를 정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해서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장기 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의회에서든 어느 분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종암로면 종암로, 미아로면 미아로, 보문로면 보문로 이 보도폭이라든가 또 가로변에 있는 건물의 유형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시민의 계층이라든지 이러한 특성을 분류해가지고 노선별로 어떻게 가로를 특성화하고 거기의 환경에 어울리는 나무를 심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가 좁은데 너무 큰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 건물이나 또 보행자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고 나무도 제대로 생존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수명이 오래된 나무를 갱신하게 돼 또 가로별로 가로수 특화를 해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도 환경을 살리고 또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나무들을 특화별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한번 부가가 되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의로 부가하거나 임의로 처

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든지 벌칙을 주는 행정은 모든 것이 법조문에서 명기되지 않으면 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부과하거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끝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간판업소에 대한 잘못된 부담업소, 이런데는 구에서 조치를 내리도록...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좋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업자들을 그래서 간판이 사실은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또 직·간접적인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전반기에도 광고물업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해주고 당신들이 설치하려고 오는 고객들을 범접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당신들이 제도를 잘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범법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하고 안내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라고 교육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광고물같은 것이 아까 우리 유흥선위원장님도 우리 관내업체들만 이렇게 제한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공장은 빨리 해주고, 더 잘 해주고, 법도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이하 저희들도 실제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에 뒷바침만 된다면 또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너무 법법하고 법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고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것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어떤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또 이게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들이 우리 관내 광고물을 다 설치한다고 하면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높은 광고물도 만들고 위법광고물도 정비해가고 선의의 우리 주민들이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 이쪽에서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업체들을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의견을 낼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우리 구청하고 매일 접해야 되고 업무지도감독을 받으니까 불법광고물을 해달라고 하면 안해준다 이겁니다. 허가받아 가

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옆에 종로나 동대문 가 가지고 그것도 안해준단 말이나? 그리고 거기 가서 해가지고 와서 붙여버리면 자기들은 괜히 영업손실만 보지 오히려 덕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도 실제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있다. 하는 부분은 느끼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일이 그 광고물을 점검한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이 광고물이 수시로 붙었다가 바뀌었다가 업종바뀌면 바뀌고 하는데 저희들 인력도 상당히 소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착안에 맡기고 저희도 금년도에 광고물 1만8,000건을 전부 다 전산입력을 다 해 놔줍니다. 그래서 업이 바뀌게 되면 바로 허가내역, 위법내용이 이것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라도 관내 광고업자들 우리 직원들부터 교육을 다시하고 또 광고업자들 교육을 하고 또 정기적인 순찰이나 점검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선의의 범법익없이 무의식적으로 간판을 다는 것도 무슨 큰죄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시민들 무의식중에 범법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개도를 하고 동직원들도 교육을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창만위원님께서 대로·중로·소로의 구분이 무엇이나고 물으셨고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처음 제일위에 있는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4m이상 20m미만으로 되어 있는게요. 그것은 20m미만이 아니고 20m이상까지 현재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도로전체의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4m에서 10m까지가 소로가 됩니다. 그리고 12m에서 20m미만까지가 중로가 되고요. 20m이상이 대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미집행 도로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대로

가 4개, 중로6개, 소로가 55개로 되어 있는데 그 계가 지금 말씀드린 현황에서 4m에서 10m까지를 합하면 소로 55개가 되고요. 4m하고 20m 네개 두개를 합하면 중로가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20m이상이 4개가 있습니다. 누차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실제로 계획업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구에 재정이라든지 국가재정에 의해서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집행은 현실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당장 이런 집행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획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부분에 도로가 장래에 대비하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업무이고, 그 계획업무의 계획된 선에 의해서 경제여건이나 재정여건에 따라서 집행해가는 것이 건설업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도로뿐이 아니고 실제로 공원이란지 여러가지 시설로 그 장기 수요에 대비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이렇게 지정해 놓고 보상을 못해줘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장래 수요에 대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 가서 다시 이것을 계획을 매년 수요마다 맞추다보면 이 계획자체가 일관성없는 계획이 되고 조령모개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억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도 질의받고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현재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효용성과 존치 필요성 존폐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면 서울시에서 큰 계획 도로나 교통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상위 큰계획이 먼저 나와 줘야지 그 큰 계획에 맞춰서 작은 계획이 세부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지금

미리 손을 못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면서도 일부 지금 당장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폐지해 달라고 건의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 지금 큰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금년 연말이면 나올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나오면 그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서 성북구 계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또 작년에 약속한 것이 올해 안 지켜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도시계획업무자체가 성격상 큰계획 밑에서 작은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 내년부터라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구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鄭昌萬委員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타당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년 이상된게 중로하고 소로가 38건입니다. 지금 현재 대로가 1건입니다. 대로가 1건이면 대로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 20m미만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으로 이관된지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행정감사때 미결행된 도시계획을 해제시키든지 어떤 적극적인 강구대책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서울시에서 이런 것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한다는 것은 1년동안의 공백기간을 두고서 하나도 타당성조사를 안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중로, 소로는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구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국장님과 회의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키고 또 못할 것은 못할 걸로 구분을 뒤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타당성 조사도 하나도 안하고서 작년도 행정감사때도 미결되어있는 것을 지금까지 연계성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잠깐만요. 제가 그것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도로 관리는 20m이상 대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0m미만 대로는 중로하고 소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그렇게 결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줘서 검토한다는 것이 20m이상 대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중로, 소로까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세부적인 뒷골목까지는 다 못할 걸로 보고 아마 전체 서울시의 가로망 연결체계 또 구역 중간단계 중로의 연결체계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로, 중로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소로에 대해서 거기 또 계획에 맞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鄭昌萬委員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로하고 소로가 구로 이관시켜서 구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정밀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시전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중로나 소로는 구청에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시로 올려서 시에서 도시계획상 하자가 있느냐? 확인을 해서 해제시킬 것은 빨리 빨리 해제시켜 주고 또 그냥 둘 것은 그냥두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에서만 쳐다보고 있다면 결국 성북구청으로 이관된 20m미만도로는 그냥 잊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행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아니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런데 물론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도시계획이라는게 서울시에서 계획할 때는 어떤 한구의 입장만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토이용관리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밑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계획이 나와줘야지 그 큰계획에 맞춰서 구의 도시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전체 큰 흐름에서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권역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각 시도별로 계획이 나가는 것입니다. 시도별로 광역계획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세부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게 도시기본계획체계고 현재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전체를 놓고 노선별

로 가로별로 계획을 지금 용역을 거쳐 용역은 금년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는 지역계획에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鄭昌萬委員 그러면 12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킬 타당성 여부를 완전히 결정짓는 것입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러니까 서울시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단 검토한 것이 어느 정도 선이 나오면 그 선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甲濟委員 국장님! 혼돈이 오는데요. 구청장한테 구에 위임된 것이 12m이하 도로에 위반 및 해제가 위임된 것 아닙니까? 20m입니까? 12m이하 도로아닙니까?

○鄭昌萬委員 20m미만으로 나와 있는데요.

○金甲濟委員 12m입니까? 20m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黃의태 12m이하 도로에 대해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金甲濟委員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반 및 해제권한이 그것이 시에서 위임된게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黃의태 네.

○鄭昌萬委員 그러면 12m 이하 결정권을 가지고서

○金甲濟委員 정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신게 조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다르지 않나? 그러면 12m이하도로는 거의 지금 주거지내의 도로입니다. 주거지의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울시의 도로계획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2m 이하도로에 대해서 위반건도 있고 해제건도 있으니까 그것을 과감히 구에서 다시 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도로위반 및 해제를 보니까 96년도에 4건을 했는데 그것도 위반했다가 해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무엇 인가가 구청장님이 작년에도 그것을 검토하셨노라고 했는데 전연 답변과 실행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鄭昌萬委員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요. 지금 석관동에 20년 이상이 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13개. 그러면 우리가 30개동인데 30개동중에서 지금 위반한다는게 13개나 되는데 최고로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석관동 부분에는 미개설 도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아까 김갑제위원님의 말씀대로 소도로입니다. 주택가에 있는게. 대도로 20m이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하나하나를 빨리 해제를 해주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어떤 행동을 취해 줘야지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없이 타당성여부도 하지않고 이렇게 자꾸 미뤄만 논다면 이것이 주민의 재산권에 굉장히 침해가 된다. 이겁니다. 또 뚫을 것은 빨리 뚫어야죠. 그리고 예산 예산 예산타령만 하는데 실제로 예산때문에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타당성없는 것은 도로를 뚫지 않아도 된다는지 한 예를 들어서 석관동의 주거지부지같은 것은 뚫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것은 빨리 해제해주셔서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게끔 해주실 수는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 석관동의 13건된 것은 왜 석관동만 이렇게 미개설도로가 많은지 그것도 답변 해주세요. 아니 전체 액수중에서 지금 13건이 거기 보세요. 1-84를 보면 20년 이상된 것이 13건입니다. 하월곡동 8건 정릉이 7건이 제일 크고 우리 석관동이 13건이예요. 전부 한 건, 두건인데 어찌 이렇게 연탄가루에 찌들어있는 동네는 도로같은 것을 뚫어주지 밤낮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나는 이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 정리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시행업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이것이 서면이 있어 야 되고 장래 발전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안되면 실제로 발전의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로 일제시대때 계획된 안들이 지금 4대문 지구안에 들어가면 일제시대때 제정된 건축선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김순권위원님은 장기성복 마스터플랜은 없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석관동도 지금 저희들이 일부 상세계획으로 해야 될 곳도 있고 지금 재정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습니까만은 사실은 작년에 우리 성북구 의회에서 도시계획이반하고 결정한 것이 아마 서울시 전체 업무의 한 절반정도를 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아리랑길 인천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 스스로를 과찬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성북의 도시계획이 그동안에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자치제 시행되고 성북 스스로 살길을 찾다보니까 도시계획이 용도변경에다 상세계획이다 도시설계다 도로확충 계획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재정수요가 따르지 못하다보니까 당장 시행도 못해주고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연말에 어차피 서울시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성북자체 계획안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시원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順權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봤을때 헌법상으로 봤을 때 사유지 재산권 문제하고 토지공개념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토지공개념 부분을 중시여기다가 요즈음은 다시 사유적 재산권 문제가 중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대법원판례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20년이상 미집행 도시에서 보면 6m짜리가 25m입니다. 실질적으로 6m도로는 소방도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방도로를 뚫어야 할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유도할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기적인 교통이라는 것은 광역적인 개념인데 광역적인 단위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할 텐데 6m 경영에는 거기에 준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은 나왔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서울시 흐름에. 지금의 도로확충이라든지 봤을 때 6m, 4m, 8m정도는 과감하게 우리들이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러니까 푸는 것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이것을 풀었을 때는 사실은 그 지역에 정체성을 가져옵니다. 푸는 것이 그 소유자들에게는 당장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전체로 놓고 보면 지역의 정체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민원을 접했을 때 공익적인 측면하고 그 사익적인 측면의 양쪽을 다 비교평가 해줘야지 어떤 절박한 민원현실 그것만 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아니고 현실에 너무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순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밀검토를 해가지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한다든지 상세계획을 해서 재계획을 해야 될 부분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재계획을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제 위원님께서 1990년이후 도시계획 도로로 위반했다가 해제한 현황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을 했다가 해제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김위원님 도시계획도 잘 아시고 하니까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주변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위반공고를 하면 최종 도시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지적고시를 해야지 확정이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도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의해서 장기 재정투자 계획에 맞춰보니까 투자소요가 너무 많다하는 등으로 해서 위반까지는 했는데 확정은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부결시켜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지 않고 해제공람을 나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권위원

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처리대책 하고 풍치지구해제를 위한 처리내용 성북구 발전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의는 있는지도 꽃심기 녹지보전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5가지를 물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선 도시계획 관련 분야만 제가 먼저 설명 올렸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거론됐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 성북구에서 94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우리구 관내에 풍치지구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다했습니다. 해제해야 될 부분 일부 행위를 완화해줘야 될 부분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으로 구분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잘 아실 줄로 믿는데는 서울시에서 현재 도시계획 민원중에서 가장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풍치지구 민원입니다. 풍치지구를 전부 다 각 구청에서 각 지역별로 다 풀어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어디는 풀고 어디는 묶어 놓겠다하는 발표를 계획용역까지 주어가지고 검토는 기본적인 검토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을 안해 가지고 이 부분은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된 건축조례를 보면 풍치지구 중에서 구청장이 판단해가지고 건축행위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진단을 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구청장이 행위자를 완화해줄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조례가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장한테 권한을 준것이 풍치지구 중에서 행위자는 완화가 현재 풍치지구 건축조례는 3층이하 30%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4층이하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성북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흐름하고 맞추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바로 서울시에 행위자의 완화구역지정을 요청하겠습니다. 구역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당장 실질적으로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발전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구에서 성북구 도시기본계획을 95년도에 확정된 바있고 예를 들면 지금 각 분야별로 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성북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사회 복지정책 5개년계획이라든지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통합된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고 맞추어 가지고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도시계획법상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한번 수립하고 나면 5년간은 수를 못하게 되어 있고 5년간 내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계획 수립시에는 전체적으로 인문사회 분야라든지 경제 정책분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 안감내길하고 그 중간에 재개발 구역하고 사이의 연결도로를 현재 폭이 6m인데 12m하고 재개발 구역의 8m하고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 현재 도로 6m도 병목 현상이 나올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을 확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주셨고 또 고려아파트에서 개운산 순환도로로 열결되는 도로를 개설해줄 수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해 드리겠다하기에는 제 범위를 넘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 관련절차를 거치고 내부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도시기본계획 차원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권 위원님께서 꽃심기를 하는데 성북경찰서 계단에다 꽃을 놓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니냐하는 사항과 그 녹지의 정책 녹지보전을 위한 우선의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심기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들 구청앞에 제단이라던가 도로변 성북이나 중앙경찰서 제단이라던가 구의회 또는 구민체육관앞이라던가 구청의 화단 미아리고개등 좌우측 또 소공원 또 성북동길 중앙분리대라던가 길음역분리대에 꽃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서에 꽃을 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유관기관들의 협조관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놓고 있습니다. 녹지보전에 대한 우선의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를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라던가 형질변경에 있어서 녹지보존을 많이 함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조그마한 찌뿌리땅 같은데도 녹지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만위원님께서 미아리고개에 95년도에 식재한 가로수를 95년도에 식재한 것과 96년도에 식재한 것에 대해서 규격이 틀리느냐 같느냐 하는 문제와 고가차량 구입문제여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느티나무를 심은 규격과 96년도에 느티나무를 심은 높이가 4m 직경이 15cm로서 같은 규격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수목을 밑가지에서 부터 위에까지 약 2m이상으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나무가 높고 그래서 도저히 미관상 안좋아서 금년도에는 같은 규격으로 심으면서 조금 지반이 낮은 곳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격입니다만은 그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차이는 사실상 같은 90년도와 수목단가에 의한 가격인데 낙찰율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의 차이가 약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차량은 지금 현재 전부 발주를 해서 금년도 12월 20일경쯤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고가사다리가 금년도에 구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미아리고개에서 부터 길음역 사이가 너무 지반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지를 해서 여기 수영을 일정하도록

예쁘게 맞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재 파쇄기에 대해서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나하는 그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목재 파쇄기는 저희가 95년도 말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별도로 목재 파쇄기를 가동하는 인원이 없고 저희들 녹지관리 임부들이 시간이 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이 목재가 나온량이 지금 현재 약 196m³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월별로 쭉 시간이 나는대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움직이는데는 약 5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넣어주고 기계를 돌려주고 뒤에서 또 해주고 이러한 인원이 그래서 현재 약 62m³정도는 완료를 했고 잔량이 136m³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양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1일 날하고 내년도에 1,2월달정도 한가한 시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바쁘더라도 즉시즉시 파쇄목이 들어오는 즉시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근린공원내의 관리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담장을 친 사항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5월 20일경에 양쪽 성북경찰서와 중앙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에 이와 같이 불량배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를 해달라하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협조한 결과 방법초소를 위에서 밑으로 옮겨달라 해서 방법초소도 옮겨드리고 앞으로는 최대한 더욱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러한 사전에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의 고발 건수라든가 행정지시 위반이 이렇게 많은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고발한 사항은 전부 다 행정지시 위반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지시를 뛰어서 이것을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불법이니까지 말라던가 또는 대개가 행정지시 위반을 그런벨트

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니
까 철거해 달라든지 이렇게해서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한번 두번 지시해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발한 사항이고
임야를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고발건은 2건이 됩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들어서 앞으로 고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
을 기해서 가급적이면서 예방차원으로 또
가급적이면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여러
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월곡
근린공원의 현재 수도장치를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것은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해서 전부 다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이 당초
에 현장에도 제가 나가고 수도사업소에서는
공무과장이 나와서 같이 서로 위치를 봐가
지고 했는데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약간 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아
서 저희들이 다시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전
화연락을 했더니 지난 11월 20일경에 거
기에 따른 보조장치를 설치해줬습니다. 보
조장치를 열면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나오고 또 보조장치를 잠그면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보조장치를 지금 현재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점검을 철
저히 해서 물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활
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委員長 李鍊炯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 있
습니까?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아주 간
단하고 정확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金甲濟委員 본 위원이 어제부터 자꾸 자
료를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진취적이고 발
전적으로 잘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20m 미만 도시
계획 도로현황에 4m가 분명히 1건이 있습
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 도로 내역에는
4m가 아무리 네가 눈이 나쁜지 없어요.
그런가 하면.

○都市整備課長 黃의태 1건 있습니다. 4m
짜리가 86쪽에.

○金甲濟委員 82쪽에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黃의태 86쪽에 보시면요. 20
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10번에 보시면 석
관동 64동까지가 그렇게 4m가 있습니다.

○金甲濟委員 어디에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黃의태 86페이지에 있습니다.

○金甲濟委員 86페이지요?

○都市整備課長 黃의태 번호 10번을 한번
봐주시죠.

○金甲濟委員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보다는
더한 중요한 부분은 4m 짜리가 하나가 있
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내가
길음 3동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
네만해도 2,3건이 됩니다. 4m 미만이 미
집행된 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1건만 남아
있는지 그 자체로 보아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자 하
는 것은 앞으로는 성의있고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김순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金順權委員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에게 묻
습니다. 꽃심기 대안에 대해서요. 내년부터
성북 경찰서 중앙경찰서 앞길에 꽃을 심지
마십시오.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집행하는
것은 위반사항입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
라고 두번째는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
금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배드민턴장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배
드민턴장이 클럽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강한 침해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위원, 시위원, 구청장, 국회의원들에게 로
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배드민턴의
논리에 보존 논리가 안됩니다. 확실하게 우
리가 잡아내야 합니다. 북한산이라든지 일부
가 파괴되면 우리 후손도 살 수 없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서 여러 집단에서 과감하게 공무원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시고 보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유홍선위원님 보충 질
의 있습니까?

○柳興先委員 보충질의 하려는데 자료 요청

한 것이 안왔어요.

○委員長 李鍊垌 자료를 빨리 가져다 주십시오.

○柳興先委員 어린이 놀이터의 그 3건 다음 꽃. 성북구의 남품한데는 하나 꽃을 화분을 몇 개를 가져 왔는가 그 영수증하고 화분하고 우리 구매한 것을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委員長 李鍊垌 자료를 요청한 것을 빨리 빨리 갖다드리세요. 김영기위원님 보충질의 다 하신 다음에 하세요. 김영기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金鈴基委員 저는 보충질의를 찾아가서 개인 면담으로서 충격을 하였습니다.

○委員長 李鍊垌 네. 다음 보충질의 하실분 조기찬위원님.

○趙基燦委員 녹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재 파손기 구입할적에는 물론 사용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밀하게 해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해놓고 인부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100 만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 인부가 없어 못하겠다. 이거 누가 할 말입니까? 그런 정도 실력밖에 안됩니까? 우리 녹지과장님이 유능한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단히 불성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목재를 파손기를 구입했으면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자재도 어디다가 팔던가 뿌리던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이 주민 휴식공간을 쾌적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인부가 없어서 못했다.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해요.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또 녹지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네요. 6월 2일날 불량배가 관리사무소를 습격해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방법 초소를 옮겼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방법초소 사건난 후로 오동 근린공원 시위원 3명, 구위원 6명을 데리고 중앙 경찰 서장을

방문했습니다. 월북 근린공원 방법상태가 아주 형편이 없으니 방법초소를 해주십시오. 해서 서장한테 승락받고 월북 파출소 승락받고 옮긴 사실입니다. 이렇게 방법초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방법초소 옮기고 경찰서에 그렇게 일을 하면 될텐데 방법초소 옮기고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콘테이너박스도 안보이고 2m, 3m 담을 쌓고 그러면 방법이 관리소 한 사람을 위한 방법인지 월북 전체 근린공원의 치안상태를 위해서 한 것인지 접근방법이 틀렸다. 이말입니다. 넓게 봐가지고 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垌 네. 알겠습니다. 이승노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李承魯委員 자료가 왔기 때문에.

○委員長 李鍊垌 네. 질의하세요.

○李承魯委員 이승로입니다. 북악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악골프장 작년도의 그물망을 설치한다고 5천만이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별도로 8천만원이 지금 96년 금년에 지금 지출된 겁니까? 그 장비 비품산다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것은 95년도에 그 당시 오픈을 할 때 미쳐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구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설치해 준 그런 사항들입니다.

○李承魯委員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돈 지출은 언제 됐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지출은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금년도의 위탁요에서 8억7천만 위탁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았습니다.

○李承魯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출 항목 명세서가 나오겠네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 명세서 나옵니다.

○李承魯委員 원래 계약서상에 8천만원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계약서 사항에 95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李承魯委員 그것을 해주기로 그러면 95년

도에 그러면 돈이 5천만원이라든지 8천만원 지출이 된다고 승인의 제의를 받았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도에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예산 편성과정에서 95년도에는 이것이

○李承魯委員 전혀 몰랐었죠. 지출을 몰랐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골프연습장 문제로 우리 이연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국장님 모여서 한번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죠. 그때 얼마로 얼마로 했습니까? 5천만원으로 하겠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아니요. 그때 8천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李承魯委員 그때 8천만이라고 얘기 하했어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5천만은 철답이었요.

○李承魯委員 잠깐 들어보세요. 철답은 얘기가 안되고요. 그때 그물망외에 장비를 보장해 주는 계약서상에 5천만원을 추가해 준다고 하니까 왜 5천만원을 김규태 공원녹지과장 마음대로 이것을 해주느냐 5천만원인지 8천만원이인지. 본 위원한테 5천만원 이야기를 하시길래 본인은 질책한 적이 있습니까? 왜 임의대로 변정수씨한테 끌려다니면서 5천만을 해주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그 좌석에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8천만이 올라왔길래 아무리 앞으로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다른 것까지 2억정도 해주지 않느냐 염려가 상당히 듭니다. 그런데 8천만원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5천만원으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김규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5천만 8천만원 액수가 정해져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든지 필요하면 장비 준비는 우리가 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금액이 8천만원이라고 하면서 그러는 뭐뭐하는 것만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계약 당시에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졌었나 이거죠.

○金鈴基委員 그러니까 계약당시에 무엇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계약금액에서 자기 내들이 한다면 8천만을 공제해 주고 나머지 받았다. 이야기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계약서상에 컴퓨터 시스템 타석 그물망, 공사 수립기, 공 배 분기, 수납대, 매점 진열장 이렇게 다 못을 박았습니다.

○李承魯委員 그 당시에 8천만원 금액을 저축되는 거예요. 금년 예산에서 세 임대료 8억5천만 얼마나 잡혀졌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8억7천중에서 잡힌 것은 8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잡혀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만약에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지 못할 때 임대료에서 이렇게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계약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만약에 우리가 임대료가 비품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시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그 돈을 비품비를 원칙으로 지출을 했어야 하는 거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했어야 돼요.

○李承魯委員 원칙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것은 95년도 오픈할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을 이와 같이 보고 드린대로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데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로가 사전에 하고 96년도 다음 그 위탁료에서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李承魯委員 네. 알겠습니다. 만약 그때 8천만을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그 당시에는 비품비를 어떻게 지출을 할려고 예산에 편성을 안해 냈는지 그때부터 이렇게 계약서상에만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임대비에서 그것을 받으면 되겠다고 라도 그때부터 계약을 했는지?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 사항은 그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사항은 이미 계약서 상에 다음 96년도에 2억 8천만원을 공제하겠다고 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공제하겠다”라고가 아니고 원래 비품비를 지출을 해주지 못할시에는 그게 공제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비품대로 공제하겠다고 아니고. 계약서 내용에. 그렇다면 처음에 지출을 8천만을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 원래 원칙으로 지출을 해야 되

는데 그때 선정하지 않고 예산에 집어 넣지 않고 그냥 과장님 임의대로 나중에 계약서 상에만 넣고 나중에 공원사용료에서 공제하면 그것만 받아야 겠다. 이렇게 원래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어떤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돈을 지출을 했다 아무도 구에서는 모르는 근거없는 얘기를 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 8천만을 예산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지출했다는 얘기에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방침을 받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 편성에 안올랐습니다.

○李承魯委員 '95년도 했습니까? 계약당시에 그것을 다 의회에 공포를 했었냐고요. 예산에 진행 과정해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다음에 변경숙이 하고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어떤 타석을 증설하겠다. 어떤 장비를 보강하겠다. 예산이 대략 2,3억들어 갈텐데 계약서상에 만약에 보강한 장비를 돈을 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임대료에서 다시 공제한 후 지출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이것만 놓고 소리없이 아무 근거없이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그 당시 오픈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이런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承魯委員 금년 세입 지출안은 9천만원 지출이 된 것이 나와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다 나와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나와 있어요. 8억 7천이 잡혀있고 9천만원 잡혀있고 지출이 됐으니까 나와 있는게 당연하겠죠. 8천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김규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모저모 임의로 이것을 근거없이 임의로 사용한 결로 밖에 봐줄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公園係長 具本三 제가 잠깐 보충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원계장입니다. 당초 여기 95년도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실 비품이라든지 그물망이라든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약당시 안하면 못하겠다. 이 자체가 안들어 오면 계약을 못하겠다. 시설을 집을 빌려도 기본시설은 해주어야 들어오는거지 기본시설은 해주지 않고 돈만 받아먹고 하느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다면 계약당시에 8천만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8천만 범위내에서 그러면 우선 집행을 하고 당신 돈으로 하고 내년 수입 임대료에서 제하고 주겠다. 그래 가지고 방침을 작년 의회때에도 무척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李承魯委員 8천만에 대해서...

○公園係長 具本三 작년 의회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청찬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李承魯委員 작년 8천만원에 대한 속기록 한번 가져와 보세요. 5천만원 그물망에 대한 얘가지 작년에. 8천만원에 대해서는 처음이예요.

○公園係長 具本三 95년도 계약서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나와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보였거든요.

○李承魯委員 작년에 이야기 한 것은 그물망에 5천만원 가지고 실랑이를 했지.

○公園係長 具本三 그것은 연말에 철탐공사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작년에 의회때에도 말씀이 있었고 예산편성 당시

○李承魯委員 그렇지요. 근데 지금 이 8천만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십니다. 여기서 지금 아시는 분은 지역개발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밖에 몰랐어요. 얼마를 알았었냐. 그물망 말고 5천만원으로 알았어요. 5천만원이 계약서상에 삽입이 됐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장께 그 얘기를 들었던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마음대로 이 5천만원을 계약서상에 삽입을 시킵니까? 계약서상에 보면 제1항으로 96년도 예산에 반영 지출토록 하겠으며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8천만원을 집어넣었어야 해요. 그런데 안 집어넣었어요.

○公園係長 具本三 원래 예산안을 세워가지

고 주는게 원칙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계약 자체를 96년도에 제하고 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계약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李承魯委員 무슨 얘긴지 아는데 지금 이 8천만원이 원래 작년에 96년도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됐다면 과연 이 안이 변정숙이를 위해서 구의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켜줬나 이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카바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만 집어넣고 8천만원을 사용료에서 공원녹지과장 임의대로 그냥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진다 이겁니다.

○委員長 李鍊炯 녹지과장님께서서는 답변을 못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李承魯委員 그러니까 예산안을 96년도에 8억7천이 세입으로 잡혀졌으니까 지출이 8천만원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5천만원 플러스 8천만원 하면 1억3천만원 아닙니까? 1억3천만을 올렸을 때 만약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됐는지 사실적으로 그냥 그 임대료에서 공제하기로 결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文京周委員 같이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5천만원이라는 것은 작년 예산에서 그물망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85년7월14일날 계약을 할 당시 우리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 계약당시 사용료에서 8천만원이라는 것을 공제를 해줄터이니 변정숙씨보고 그 설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文京周委員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그렇게 됐으면 그때 95년7월14일날 계약을 하면서 '95년7월14일날 집행된 8천만원을 7월14일날 공제를 하고 7억9천만원을 받은 거지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그렇습니다.

○文京周委員 근데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아니 저기서 묻는 사항은 그 사항보다도...

○文京周委員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8천만원이라는 지출내역이 우리 주무과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처리한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라던가 등등 여러가지를 보고서 8천만원을 결정을 했더라도 그것은 우리 구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과연 8천만원 집행이 다 됐는가 여기 보니까 8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과연 딱딱 떨어지게 집행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承魯委員 간단히 맺을게요. 결론은 제가 항목을 보니까 매장 진열장해서 5백만원 공 배분기해서 9백만원 기타 공 수집기해서 3백만원 이런 형태에서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과거에도 있었던 장비인데도 항목에 많이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돼야 할 부분의 8천만원을 공원녹지과장께서 변정숙이한테 선심을 썼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적법한 답변이 있다면 해주세요.

○文京周委員 우리 구청에서 직접 예산집행을 했으면 저렇게 예산이 많이 소모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委員長 李鍊炯 네. 됐습니다. 아니 녹지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승인도 받지 않고 지출을 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억7천을 수입으로 잡고 8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출로 잡아야 원칙인데 사실상 예산으로봐서 작년도에 그물망하는 것도 어렵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5천만원으로 한 그런 사항인데 여기다가 8천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제외하고 5천만원만 직년도에 예산편성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8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터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영수증이라던가 세금계산서라던가 이런것을 전부터

비치해가지고 공제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許東翼委員 그것이 아니고 예산집행 8천 만원을 녹지과장 임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집행 8천만원을 구에서 세목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출을 했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장이 임의로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입니다. 질문사항을 똑똑히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鍊垌 이거 어떻게 시정할거예요?

○李承魯委員 그 부분을 우리 도시정비 박 국장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맺어 주십시오.

○委員長 李鍊垌 약10분간 감사증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鍊垌 약 10분간 감사증지를 선언합니다.

(17時10分 監査中止)

(17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鍊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먼저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수입을 계산하면서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수입사용료 들어올 부분하고 이미 95년도에 북악골프연습장 임대계약을 하면서 그 임대계약서 제6조엔가 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시설해주고 그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인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녹지과장이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골프연습장으로써 필요한 시설이 다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우리 구청 예산행편이나 전문기술 부족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미비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그 비용은 우리 구청에는 부담해 준다. 하

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예정수입하고 예정지출가가 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시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마땅한데 실제로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그 부분에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수입란에서는 8억5천으로 전부다 잡았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8억7천이 나와가지고 고정 수입액을 잡고 이미 85년도에 지출하기로 계약상에 돼 있는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세출항목에서 편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편성을 안 해놓고 그대로 금년도 계약하면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출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지출을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함부로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자를 남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절차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했다는 하자는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 재산은 수탁자가 설치를 하고 비용은 우리가 주되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기간 종료후에 우리구 재산으로 한다고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 그 자체에 대해서 초과지출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에 하자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垌 제가 그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1대때부터 상당히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은 그런 골프연습장입니다. 비용이 참 많이 들어 갔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세를 8억5천만원 받았어도 8억5천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 갔어요. 오히려 그런데 제가 그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8억7천만원이 제대로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8천만원집행이 잘못됐어요.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냥 지출을 해버린겁니다. 그래서 수입은 그대로 적혔는데 지출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지금 위원장님이 말

씀하신대로 수입은 잡고 지출항목에 대해서 일부 누락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남겼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丘在永委員 한마디만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절차상의 잘못은 있다고 하는데 수입은 8억7천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지출내역은 예산서에 없고 뺄려 있는데 그럼 그건 어디서...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8천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그 당시에, 95년도에 오픈할 때,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먼저 공사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 공무원들...

○丘在永委員 잠깐 주세요. 그건아는데 뺄려어진 지출내역을 어디서 메꾸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니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돈을 유용해서 썼다는 것이 아니고 8천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96년도 예산서에 실려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검토를 안해도. 근데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李承魯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금 구재영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질의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順權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정황으로 봤을때는 이해가 됩니다. 기업체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입장에서 예산을 할 때 수입대책을 잡으면서 편성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두번째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예산성, 공정성, 투명성의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입증할 수 있도록 서류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丘在永委員 증빙서류로서는 우리가 입증이 가는데 예산편성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

가 어떻게 그걸 메꾸느냐 이거지요.

○委員長 李鍊炯 지출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丘在永委員 지출내역은 아는데 예산서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뺄려어졌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鍊炯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입은 다 들어왔는데 지출내역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상 집행하는데 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제는 다음에 예산과장한테 물도록 하십시오.

○鄭昌萬委員 위원장! 다른 것 합시다.

○委員長 李鍊炯 네. 이해하시겠어요?

○李承魯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이승노위원님!

○李承魯委員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많이 문의해 오시는데 본의원이 기획예산과나 또는 새해예산안을 보고 별도자료를 받아서 우리 지역개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다음 보충질의입니까?

○鄭昌萬委員 보충질의든 뭐든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우리는 규제해 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委員長 李鍊炯 보충질의입니까? 네. 하세요.

○鄭昌萬委員 규제 너무 하세요. 진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규제를 하면서 하세요.

○委員長 李鍊炯 누가 규제를 합니까? 지금...

○鄭昌萬委員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委員長 李鍊炯 똑같은 얘기를 자꾸하니까 그렇죠.

○鄭昌萬委員 같은 얘기를 누가 했단 말입니까? 지금...

○委員長 李鍊炯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충질의냐? 질의냐? 묻지 않습니까?

○鄭昌萬委員 내가 보충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委員長 李鍊炯 보충질의라면 하십시오.

○鄭昌萬委員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물었는데 96년도 고가차량을 구입해서 가지고서 12월 20일날 발주를 하시고, 납품을 받

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발주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이미 기발주돼 가지고 납품을 받는 겁니다. 12월 20일경에...

○鄭昌萬委員 12월 20일경에 납부를 받는 겁니까? 그때 발주는 이미 해가지고 차량이 그럼 어떻게 외제입니까? 국산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차량은 국산이고 그 다음에 별도로 장비와 따로 따로 차량은 차량대로 구입이 되고 장비는 장비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발주가 완료가 돼서 12월 20일경이면 모두가 다 제대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鄭昌萬委員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수출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鄭昌萬委員 이것이 언제 발주됐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그게 추경에 통과되고 즉시 발주를 했습니다. 11월경에 제가 발주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鄭昌萬委員 추경하고 바로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추경 즉시 통과가 돼서 통보가 온 그 다음에 즉시 발주했습니다.

○鄭昌萬委員 됐습니다. 12월 20일경에 납품 받는 다니까 다행입니다.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12월 20일경에 납품을

○鄭昌萬委員 그것은 됐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화합차원에서 유대관계를 위해서 거기다 예산을 편성시켜서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주시는데 경찰서의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왜 구에서 꼭 그 경찰서같은 데에 유대관계라 해가지고서 거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쓸데가 많은데 거기다 예산편성 해가지고 경찰서예산도 있는데 거기다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가는 자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과거부터 쪽해왔고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거절하기가 어려워

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길가로에도 놓고 길거리에도 놓고 구청에도 놓고 또 의회에도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꽃을 놓는 것은 우리 구청에 놓는 것이 우리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찾아오는 우리 주민들이 좀더 밝은 분위기에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사실 주민을 위해서 놓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놓는 것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해서 버스타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고가는 우리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경찰서라는 데가 보통 시민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고 사실 거기 안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거기에 가는 주민들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더 밝은 분위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해주고 그러다보면 구청하고 경찰하고 우리 관내에 다른 기관들도 여러 가지 행정협조를 하고 협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돈으로 경찰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거기에 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順權委員 금년만 양해해 드릴게요.

○委員長 李鍊炯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丘在永委員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어디 꽃에 대해서요.

○丘在永委員 네. 1분만 합시다. 한 30초만 합시다. 30초.

○委員長 李鍊炯 네. 구재영위원님!

○丘在永委員 환경미화작업으로서 동사무소에도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동에도 지금 저희들이요. 일부 동예산을 배정해가지고 동에서 필요한 곳에도

○丘在永委員 얼마씩이나 해졌어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동에서도 또 지역별로 해가지고 동에서도 필요한 곳에 꽃을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丘在永委員 그러니까 한동에 얼마씩 해주었어?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것은 동에 예산배정한 것은요. 우리 공원녹지과나 도시정비국에서 배정한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각동별로 환경정비차원에서 또 환경정화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하시면

○丘在永委員 그 액수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일 위원님께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丘在永委員 그러실래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丘在永委員 총무과에서 배정을 했다고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委員長 李鍊炯 허동익위원님 하세요.

○許東翼委員 돈암1동 허동익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하는데 그 4대 우선 순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를 사업계획확정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번째 북악스카이드로가 미아리고개 구름다리가 생긴 이후에 안암동까지 상당히 필요한 도로인데 거기에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봤는지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성북구에 정통길하고 아리랑길이 이것의 소용이 상당히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이 점에서 연구검토를 해봤는지 답변해주십시오.

○委員長 李鍊炯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십니까? 정창만위원님! 제가 말씀이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정창만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다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들었을 때 정창만위원은 2대제고 또 아무래도 초선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정창만위원님이 사실 웬만한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 몰라서 질의하는 것

도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도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초선위원님들한테 내가 발언권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창만위원님한테 내가 안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창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鄭昌萬委員 알았습니다. 한두가지 알고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녹지과에 가로수 전지작업 고가사다리 임차료라고 해서 10만원씩 해서 30일 드렸거든요. 그게 사실 3천만원씩해서 3백만원이 입금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 소모시켰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남아 있나요. 96년도 예산에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금년도 예산은 썼습니다.

○鄭昌萬委員 네. 예산은 다 전지작업에 들어갔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네. 금년도 예산은 고가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썼습니다.

○鄭昌萬委員 다 소모시켰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김순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順權委員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아리랑길에 보면 북악주유소에서 구민회관 입구까지 도로20m까지 현재 고치는데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다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세요.

○委員長 李鍊炯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委員長 李鍊炯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鍊炯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먼저 허동익위원님께서 도시계획사업집행의 우선 순위를 물으셨고 또 도시계획사업시행시 교통영향평가를 하였나? 또 미아로구름다리설치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했느냐? 하는 질의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내일 건설국에 도시계획사업은 계획은 저희 도시정비국

에서 세우고 있지만 사업의 집행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집행의 우선 순위는 저희들 우리가 직접 집행은 안하더라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순위를 중장기 해당 구청에서 구상립을 꾸려가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재정투·융자하고 또 사업시행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한 우선 순위부터 민원많은 데를 해소함으로써 사업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높은 데에서 우선 집행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재정투·융자계획이 같이 따라가야 하거든요. 사업집행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시행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동별로 하느냐? 또 미아로구름다리설치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했느냐?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도시교통촉진법에서 교통사업시행규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구도, 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용도와 규모,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의 크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아마 미아로구름다리부분은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東翼委員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사업의 효율성을 떠나서 민원이 많으면 그것을 우선 순위에 둔다 이 말씀입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효율성하고 재정형편이나 재원조달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할 순서를 우선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허용하는 데까지 순차적으로 잘라서 집행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許東翼委員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북동길 확장공사나 정릉길영창실업도로공사와 미아로구름다리에서 고대앞으로 나가는 그 길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중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안더라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許東翼委員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우리가 대중 생각해도 아리랑길에서 시작해서 고대뒤편으로 안암도로로 나가는 길을 기점으로해서 성북구에 교통이 얼마만큼 원활해지지는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리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업에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집단민원이 많은데 그동안에 말이 많은 곳에만 먼저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것인가?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또 현재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성의 정도, 또 그것이 비록 앞선다. 하더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또 순위가 필요성을 앞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앙로에서 성북구청으로 오는 직통개선도로를 만드는데 필요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예산규모가 뒷받침이 안되면 또 필요성은 비록 앞선다고 하더라도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지 도로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것하고 아까 매치 시켜서 연관시켰는데 우리 구재정에서 재원조달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은 어디까지를 금년에 마무리 짓겠다. 내년도에 어디까지 하겠다.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집행해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許東翼委員 그러면 스카이드로에 대해서 중요성을 국장님이 인정하시는지 국장님의 소신이 어떠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지금 허동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아로 구름다리가 현재 개설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에 지금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접한 부분에서 도로가 끊어져 가지고 현재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구름다리에서 동쪽으로 끊어진 부분의 돈암동 지역에 재개발사업장에 대해서도 아파트건설공사에 앞서서 도로를 미아로로 연결시키는 것, 돈암동 연결시키는 부분은 도로공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중용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제가 말씀안드려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구름다리가 현재 끊어져 가지고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은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許東翼委員 예산편성을 열어가시고 그것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 다음에 김순권위원님께서 북악도로확장계획이 시에서 재검토 지시돼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셨습니다. 시에서 재검토하라고 내려온 내용이 꼭 폭이 20m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는지 교통에 대한 영향분석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 그 기능을 그 만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교통전문가들 또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안에 확정되면 다시 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順權委員 도시계획선은 언제나 그렇습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몇개도로가 재검토된 부분이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우리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로 진단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金順權委員 금년내에 빠르면 도시계획선이 확정되면 어차피 서울도시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98년도에 잘해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네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빨라야

○金順權委員 네. 잘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鍊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時 08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14人

李鍊垈	李承魯	金東殷
羅光洙	鄭昌萬	金甲濟
文京周	趙基燦	金順權
柳興先	丘在永	金鈴基
徐榮振	許東翼	

○缺席委員 1人

辛在福

○參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林洛吉
------	-----

○參席專門委員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公園綠地課長	金圭泰
建築課長	尹炳圭
都市整備課長	黃義泰